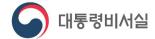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2-1015040-000001-01

정책보고서 2016-65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보의 효율적 연계방안



정은희·박세경·류정희·Hajime Takeuch·정희선





#### 【책임연구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 저서】

2014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책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동)

#### 【공동연구진】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Hajime Takeuchi Bukkyo University Professor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대통령비서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6. 9. 23)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보의 효율적 연계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목차

요 약1
제1장 서론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41
제2장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관련 선행연구 ······· 1
제1절 아동학대 정보관리 관련 국내외 기준 및 제안사항1
제2절 아동학대 관련 국내 정책 방향과 변화4… 2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아동학대 업무 정보관리체계
제1절 영국의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99
제2절 일본의 정보관리체계 분석
제4장 아동학대 정보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 정보공유 및 연계 현황9
제3절 정보공유 및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
제5장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공유 및 연계방안5·11
제1절 아동학대 정보 공유의 기본 방향과 원칙
제2절 보호단계별 필요정보, 정보공유 및 연계 방안911
제3절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921
제4절 향후 과제
참고무허 135

$\overline{\Sigma}$	목치	
11	7/1	

〈丑	$1-1\rangle$	학대 업무 단계별 유관기관, 유관부처, 정보체계	··· 1
〈丑	1-2>	초점집단 면접 참여자 및 진행 시기6	1
〈丑	3-1>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대응건수와 그 추이	·· 5
〈丑	3-2>	아동상담소의 학대상담 경로별 건수의 추이	·· 5
(丑	$4-1\rangle$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 범주6	7
〈丑	4-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규정 비교	··· 7
(丑	4-3>	사전발굴 및 예방단계의 연계 협력기관2	. 8
〈丑	$4-4\rangle$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아동복지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2 규정5	8
〈丑	4-5>	보호단계별 관련 정보시스템	9
〈丑	4-6>	국가아동학대시스템 관리 정보	9
〈丑	$4-7\rangle$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9
〈丑	4-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정보 현황	9
〈丑	4-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1
〈丑	4-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DB 관리 정보 ···································	1
〈丑	4-1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	
〈丑	4-12>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관리 정보4…0	1
〈丑	4-13>	해바라기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	
〈丑	4-14>	사전 발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1
〈丑	4-15>	신고경로별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	·· 1
〈丑	4-16>	조사 및 사정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	···· 1
⟨丑	4-17>	개입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	·· 1
⟨丑	4-18>	사후관리 유관 기관 간의 필요정보와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 1

그림	목차		
[그림	3-1]	위기아동의 지방정부 아동보호체계 의뢰 및 처리 절차	<b></b> 3 3
[그림	3-2]	위기아동의 즉각적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 <b>4</b> ······· 3
[그림	3-3]	Children Act 1989에 따른 사례 진단 및 사정(assessment)을 위한 절차	6 3
[그림	3-4]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전략적 논의 이후 보호 절차	···7······· 3
[그림	3-5]	아동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 이후 보호절차	··· <del>8</del> ······· 3
[그림	3-6]	아동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 종료 이후의 보호 절차:	
	아	동 안전보장체계에서 원가정 복귀까지의 과정	9 3
[그림	3-7]	영국 아동 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 정보공유 과정의	
	핵심	심 의사결정 흐름도	···54
[그림	3-8]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대응건수와 그 추이	··· <del>0</del> ······ 5
[그림	3-9]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사 인원수의 추이	···4······· 5
[그림	3-10]	아동을 지키는 지역네트워크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	··· <del>6</del> ······ 5
[그림	3-11]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설치상황의 추이(전국)	··· <del>6</del> ······· 5
[그림	3-12]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에 대한 전문직 배치현황(2015년 4월)…	7 5
[그림	3-13]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직원의 배치현황(2015년 4월 정규직.비정	규결)5
[그림	3-14]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직원의 배치상황(2015년 4월 겸.전임별)ㆍ	··· <del>8</del> ······ 5
[그림	3-15]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del>9</del> 5
[그림	4-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2001-2015)	··· <del>1</del> ······· 7
[그림	4-2]	아동학대 및 방임 빙산이론(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2 7
[그림	4 - 3]	아동보호체계의 범주	···4······ 7
[그림	4-4]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범주	···4······ 7
[그림	4-5]	발생원인별 요보호아동 현황 (2000~2015)	··· <del>4</del> ······· 7
[그림	4-6]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0····· 8
[그림	4-7]	예방 및 발견단계	··· <del>1</del> ····· 8
[그림	4-8]	조사 및 사정단계	···4····· 8
[그림	4-9]	지역아동복지협의회의 구성	··· <del>6</del> ······ 8
[그림	4-10]	개입단계	···7···· 8
[그림	4-11]	차등적인 대응시스템의 아동보호 흐름도	···8······· 8
[그림	4-12]	사후관리단계	<b>⊙</b> 9
[그림	4-13]	아동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주요책임영역	1 9

[그림	4-1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요9
[그림	4-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도9
[그림	4-1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도9
[그림	4-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요도 ···································
[그림	4-18]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요도 ···································
[그림	5-1]	예방 및 사전 발견 정보 연계 체계(안)
[그림	5-2]	신고 및 접수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그림	5-3]	조사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
[그림	5-4]	사정 및 개입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그림	5-5]	사후관리 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82 1
[그림	5-6]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안)
[그림	5-7]	지역사회협의체를 활용한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안)1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로 연계가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부처/기관 별로 분절되어 있는 아동학대 업무 관련 기관들 간의 공조부족이다(박세경 외, 2014;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2014). 아동학대 업무의 분절성은 아동보호체계에 속한 다양한 기관, 단체 간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연계를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개입을 지연시켜 아동보호체계 내에 이미 유입되었던 아동임에도 적시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2014; 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적으로 학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신고 전에 미리 예측하여 발견하는 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학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예측하고, 고위험 아동에 관한 정보가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와 연계가 요청되는 정보시스템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유관기관(정보시스템)		필요 정보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신고 접수 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 학대위험 예측 정보 (고위험, 사망위험) • 학대행위자 범죄경력 정보 •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정보	<ul><li>아동행복지원시스템(예정)</li><li>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li><li>행정정보시스템</li></ul>
	해바라기센터 (성학대정보시스템)	학대피해 이력 정보     학대위험 예측 정보 (고위험, 사망위험)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 아동행복지원시스템(예정)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학대피해 이력 정보     학대위험 예측 정보 (고위험, 사망위험)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 아동행복지원시스템(예정)

유	-관기관(정보시스템)	필요 정보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조사 및 사정 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ul> <li>학대위험 예측 정보         <ul> <li>(고위험, 사망위험)</li> </ul> </li> <li>학대가해자 범죄경력 정보</li> <li>학대가해자의 사법처리 및 판결 정보</li> <li>가족관계 정보</li> <li>복지 및 관련 서비스 이력 정보</li> </ul>	아동행복지원시스템(예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가족관계(주민등록전산정보: 2017년 연계 예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1	법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학대피해 이력 정보 • 학대가해자 범죄경력 정보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검찰 및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학대피해 이력 정보 • 학대가해자 범죄경력 정보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아동보호전문기관	• 복지 및 관련 서비스 수급 정보	
	그룹홈		
	위탁가정		• 국가아동학대 전산시스템
개입	쉼터	• 학대피해 이력 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단계	입양기관	• 종합적인 가족문제 이력 정보 • 타 기관에서 아동이 받은 서비스	• 성학대정보시스템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해바라기센터	수혜 이력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구청		
사후 코리	해바라기센터		
단계	드림스타트	] - 로디터닝 정모 ] • 아동, 가해자 거주지 이전 정보	* YF6 생학시천경보시드템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관리	경찰 구청 해바라기센터 드림스타트 학교 지역아동센터	• 아동의 학대위험(재학대 가능성) 모니터링 정보 • 아동, 가해자 거주지 이전 정보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 아동행복지원정보시스템

학대위험 및 학대피해 아동에 관한 정보시스템은 관련 기관 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대위험 및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발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효과적인 정보의 공유 및 연계를 위해 학대아동 보호단계 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험 아동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구축될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는 잠재적학대 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위험 아동을 예측하여 학대위험 경고를 표시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대위험 경고표시(flag)가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관련 기관 담당자들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수령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 등의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조사를 수행하여 학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급여신청 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학대위험 아동을 발견하는 한 방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취약계층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학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 개입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저위험과 중위험 아동은 주민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필요하다.

셋째, 신고 및 접수 단계에서 학대피해 아동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갱신되고, 관련 기관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신고 접수된 아동의 학대 위험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아동의 과거 학대피해 경험 및학대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피해 경험 및 학대 위험도에 대한 정보는 국가아동학대시스템과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 현재 거주지와 같은 기본정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가장 최근의 정보로 갱신하고,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갱신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사정 및 개입단계에서 공통 위기사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문제와 욕구, 자원 등을 한 기관에서 파악하여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초기상담 절차를 반복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상이한 기준으로 욕구조사가 진행되어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수혜정보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력 정보는 서비스 중복수혜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 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후관리 단계에서 학대아동을 사례관리하는 기관은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어 제공되는지, 재학대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정보를 다른 기 관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학대아동 보호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연계시스템의 설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조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 간에 정보공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의 내용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관련 기관 담당자들 간에 어떠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서로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제약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공유와 관련된 법령 검토를 포함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유 과정에서 학대회 해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담당자의 비밀누설 금지, 윤리 강령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활한 정보공유는 일상적으로 협력하는 전문기관 간의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사례관리회의는 기관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청, 드림스타트센터,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통합사례회의를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 중점 사례관리기관을 선정하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업무의 통합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업무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원활히 하여 학대피해 아동을 감소시키고, 아동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아동학대, 아동보호, 아동안전, 정보연계, 정보공유, 정보관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서론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동안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아동의 수는 6,796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0,027명으로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11,715명이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학대받은 아동은 발견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학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학대 발생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2015년 현재 약 80%),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됐더라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학대 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2014년에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027건이다. 2015년에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에서 2015년에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240건이다. 2015년 전체를 기준으로 재학대 발생 비율은 10.2%이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 10명 중 한 명은 재학대 로 판정받았다는 의미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실제 재학대 발 생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가정내 학대 발생 비율이 높아서 가정 내에서 은 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첫째,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동학대의 심각한 결과 중의 하나는 아동의 사망이다. 아동학대 사망은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기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학대로 사망한 사례의 77%가 0~3세 영유아기 아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미취학 연령의 아동이 학대로 인한 사망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73%가 6세 이하로 영유아기 아동이 학대로 인한 사망에 매우 취약하다(김세원 외, 2014).

영유아기 아동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가정내 학대가 발생한다면 외부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지속적인 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세원 외, 2014).

둘째, 학대행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며, 이러한 영향은 장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광혁·김정석, 2012; 김선아, 1997). 더 나아가 학대경험은 대물림되기도 한다. 즉,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기에 학대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김선아, 1997; 조현정·이승연, 2014).

셋째,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다(김수정 외, 2016). 김수정 외(2016)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소 3천899억원, 최대 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6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 약 185억(한겨례, 2016)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가. 국가의 개입의무와 정책적 노력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36조; 박진완, 2010, p.181). 우리나라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부터 진행되었다(김혜영, 2014, p.119).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의 배경에는 1998년 남매 학대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김기현 외, 2015, p.146)1).

1998년 남매 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관의 운영비와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오

<sup>1)</sup> 부모가 남매 중에서 누나를 굶겨 누나가 사망한 사건이다. 동생이 부모 몰래 누나에게 밥을 주다가 부에 게 매를 맞고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 주민이 신고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미희, 2015, p.360), 전국적인 차원의 학대 아동보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14년이 지나서 201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개정법과 특별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현장조사 시 경찰을 동행할 수 있게 하고, 학대 부모의 친권상실 및 제한 규정을 비롯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혜영, 2014, p.133).

이러한 제도적 노력으로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증가하고 관련 기관과 종사자수가 확대되고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율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 나. 아동학대 업무 관련 기관 간의 공조부족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부처/기관 별로 분절되어 있는 아동학대 업무 관련 기관들 간의 공조부족이다(박세경 외, 2014;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2014). 아동학대 업무의 분절성은 아동보호체계에 속한 다양한 기관, 단체 간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연계를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학대피해아동 발견과 개입을 지연시켜 이미 아동보호체계 내에 유입되었던 아동임에도 적시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2014; 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보호대상 아동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원인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부처, 사업 별로 관리 운영되고, 관련된 부처/기관이 요보호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를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영철 외, 2014). <표 1-1>은 학대업무 단계별 유관 부처, 기관 및 관련 정보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학대업무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연계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들이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발생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 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소관)에서 조사와 상담이 이루

어진다. 성폭력 피해 등 학대로 판정되었을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된 조사와 상담 내용이 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소관)에 전달되지 않아서 해당 아동과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동 성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는 중복 관리되어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표 1-1〉 학대 업무 단계별 유관기관, 유관부처, 정보체계

단계	유관기관	업무	정보체계
	동주민센터(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시설 관리 및 사업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학교/유치원(교육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발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드림스타트센터/지역아동센터 (민간)	기초보장수급대상,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보호 대상 아동 보호 /교육/상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병원(민간)	아동학대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아동학대 사례관리, 피해아동 보호, 일시보호, 교육/홍보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신고 및 조사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아동 성폭력 피해 업무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i>\$</i> ^f	경찰/검찰/법원 (행정자치부/법무부)	현장조자 동행 및 수사	아동학대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병원(민간)	의료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치료서비스제공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그룹홈(보건복지부)	시설보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 기 /-미 시	가정위탁(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사정/개입 및	쉼터(여성가족부)	시설보호	
사후관리	입양(보건복지부)	입양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	상담/치료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 보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2. 연구의 필요성

#### 가. 요보호 대상 아동의 지속적인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의 보호체계로 유입된 이후 개별 아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보호 기관별로 독립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개별 정보시스템 별로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세경 외, 2014; 정영철 외, 2014).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단절로 인해 특정시스템에서는 해당 아동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누락된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나. 정보누락, 재조사, 중복 서비스 제공, 통계 정보 신뢰성 문제의 발생

첫째, 요보호 아동의 거주지 이동 등 기본적인 정보의 누락은 (재)학대피해아동의 발견과 개입의 지연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동학대 발견의 지연과 적절한 보호 서비스 제공의 지연은 심각한 경우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체계를 이동할 때마다 재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는 개별시스템 별로 중복되어 관리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동일 보호대상 아동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보호받는 경우 관련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서비스가 중복되어 제공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서 학대 관련 통계가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 다. 이동학대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단절

국내 연구에서는 학대 아동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박세경 외, 2014; 정영철 외, 2014;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와 제도개선 위원회). 2013년 이서현 학대 아동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서 '유관기관 간의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시급히 개선해 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연계는 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건으 로 진단하고 있다(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2014, p.12).

영국에서는 2000년 '클림비 사망 사건'이후 정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고,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라는 진단을 내 놓았다(박세경 외. 2014; 한겨레. 2016)

#### 라. 사례 예시: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2013년 이서현양 사망사건)은 유관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보호체계로 유입되었던 서현양을 어떻게 놓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서현양의 학대 관련 최초의 사례접수는 2011년 포항의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서현양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포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현양의 사례를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관절차는 포항과인천의 담당자 간의 7분 통화와 관련 공문으로 이루어졌다.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종결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현양에 대한 전산정보를입력하지 않았다. 이후 서현양은 울주로 이사를 갔으나, 울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서현양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이관받지 못했고(류이근 외, 2016, pp.254-255), 서현양은 2013년 울주에서 부모의 학대에 의해 사망했다(경향신문, 2013).

#### 마. 해외연구: 정보 공유의 중요성 관련 연구

영국의 경우 정보공유에 대한 중요성은 1974년 마리아 리포트(Maria Colwell Report)가 시작이다. 마리아는 7세 여아로 계부의 학대로 사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보 공유의 실패를 학대 아동 사망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공유와 기관 간의 협력은 아동 학대 업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Munro, 2005, p.377; Thompson, 2016, p.2). 학대로 인한 사망은 정보 흐름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계속되었다(Colwell Report, 1974, para 152, P 62; Thompson, 2016, p.13 재인용).

이후 1985년에 4살 자스민(Jasmine Beckford) 학대피해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Thompson, 2016, p.15).

#### 3. 연구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가. 연구목표: 학대 관련 업무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우리나라의 학대 관련 정보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연구만 존재한다 (박세경 외, 2014; 정영철 외, 2014).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처별, 사업별로 관리운영되는 정보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나. 기대효과: 학대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

이 연구는 보호대상 아동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요 보호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누락과 재조사 문제 등을 개선하여 학대 업무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대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를 감소시 키고 사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과 범위

가. 연구내용: 정보연계 기준틀 제시,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분석, 정보연계 방안 제시

정보 공유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연계를 위한 기준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보의 특성에 대한 논 의와 정보연계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근거로 정보연계 방향의 기준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업무 과정별 정보연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업무를 사전예방, 발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의뢰, 사후관리 등의 과정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정보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동학대 업무 과정별로 정보연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이유는 학대아동 보호와 관련된 각 기관의 역할과 업무의 차이로 인해 참여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관별 고유한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학대아동 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어떠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제공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영국 등 주요 아동보호 선진국에서 수행한 정보연계시스템의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정보관리체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국은 Contact Point System을 개발하여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Hoyle, 2010).

정보 연계 및 공유 시 발생가능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보호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 관련 정보의 연속성(non-stop)이 확보될 수 있는 정보공유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분석 범위: 18세 미만 아동, 학대 업무 과정별 정보관리 시스템

이 연구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하며, 보호대상 아동이라 함은 학대 아동 보호체계에 유입된 아동과 잠재적 학대아동을 포괄한다. 학대 관련 정보관리체 계는 학대 아동 발견에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과정과 관련된 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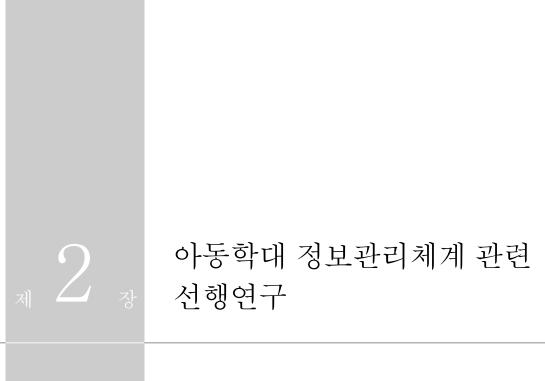
아동학대 관련 정보연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논문 및 정책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학술 자료를 검토하여 정보공유와 연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학계 및 관련 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다양한 쟁점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사전예방, 발견에서 보호관리 전반적인 과정별로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 전문가 인터뷰는 2016년 11월 2일부터 진행되었으며, 추가 인터뷰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아동학대 보호단계별정보 공유와 연계의 현황과 문제점,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현장 전문가, 관리자,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공유 및 연계 현황과, 공유와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변호사, 팀장급 관리자들을 면접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해바라기센터 부소장, 학교내 교육복지사, 병원의 아동복지 담당 의사, 구청의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면접하였다. 초점집단 면접 진행 현황은 <표 1-2>에 제시하였다.

#### 〈표 1-2〉 초점집단 면접 참여자 및 진행 시기

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구청	병원	해바라기센터	학교
2016. 10.27	<ul> <li>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li> <li>변호사</li> <li>현장실무자</li> </ul>					
2016. 11.02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 부소장	
2016. 12.0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016. 12.12		<ul> <li>아동학대 담당 경사 (APO)</li> </ul>				• 교육 복지사
2016. 12.15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여성가족플래너 지원팀장 외	• 아동복지팀 담당의사		



제1절 아동학대 정보관리 관련 국내외 기준 및 제안사항 제2절 아동학대 관련 국내 정책 방향과 변화

###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관련 < 선행연구 <

제1절 아동학대 정보관리 관련 국내외 기준 및 제안사항

1.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은 보호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관리에서 시작된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실무그룹인 CPWG(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관리를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13).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는 국가 사무와 법률이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정보제공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동의절차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7조). 따라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하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다만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과 기간에 대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와 제17조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과정에서 정보제공 동의서에 명시해야 할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 이용 목적, 정보 항목,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알려야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 정보의 내용, 목적, 기간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새랴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생략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하 생략

#### 2. 미국의 정보 공유 사례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이 기본 원칙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신고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고 과정에서부터 아동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데, 수집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기록은 주로 주정부에서 관리하고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데, 이를 Central Registries라고 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정보의 비밀보장은 연방정부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가. 정보 공개(공유)근거 및 공유 가능한 기관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기록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서비 스 개입 및 치료 제공기관과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 및 연구자, 경찰, 판사, 정보제공 당사자, 피해아동, 부모, 보호자, 변호사, 피해아동 보호자 등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많은 경우 이를 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외의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의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예비위탁모 또는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보호대상 아동에 관한 욕구파악이 그 목적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 련된 기록은 대부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지만, 아동 학대 사망사례와 같은 특별한 경 우에는 정보공개를 허용한다.

나. 정보사용: 잠재적 피고용인과 자원봉사자의 학대행위자 확인을 위해 정보공유 가능

취업자와 자원봉사자의 학대행위 유무를 사전 검토(screening)하기 위한 용도로 아동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기록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에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주가 Central Registries에 지원자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도 있다(예: 워싱턴 주). 학교 및 의료 관련 기관의 고용주도 지원자가 학대 관련 가해자인지에 대한 정보를 의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잠재적 취업지원자와 자원봉사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로만 제한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부모가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학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예: 미시시피, 뉴저지 주).

#### 다. 정보공유의 효과성: 학대아동 사망 예방

미국은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2016년에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사망 근절을 위한 위원회(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에서 국가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공유의 핵심 목표는 '학대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상당수는 미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신고가 들어왔던 아동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대아동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아동보호서비스 기관(CPS: Child Protective Services)과 같이 아동보호와 관련 있는 공공 기관들 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이 외에도 아동학대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의 목적은 국가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견하고자 함이다(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미국은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3년에 학대사망 근절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The Protect our Kids Act를 제정하였다.

#### 라. 미국의 플로리다 주 힐스보로 카운티(Hilsborough County) 사례

미국 플로리다 주, 힐스보로 카운티는 아동학대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었다. 2009년 에서 2011년까지 힐스보로 카운티에서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전부 3세 미만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아동보호 서비스 기관(CPS)에 아동학대로 보고되었던 사례였다.

힐스보로 카운티는 9명의 아동학대 사망 사례를 심층 조사하고 힐스보로 카운티에 있는 아동보호서비스 사례(1,500가정, 3,000명의 아동)를 모두 조사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 아동보호서비스(CPS)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새로운 정보관리 시스템(Eckerd Rapid Safety Feedback: 이하 ERSF)을 도입하였다. ERSF는 아동학대 사망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고위험 아동을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아동이 발견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고위험 아동 표식(flag)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고위험 아동을 즉각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서비스 관리자, 슈퍼바이저, 사회 복지사들과의 회의를 소집하고 즉시 가정 방문을 한다(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ERSF는 실시간으로 고위험 아동을 발 굴하여 즉각적으로 사정과 개입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실증적 근거(evidence based)에 기반한 정보관리 시스템은 학대아동 사망을 근절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보고되었다. ERSF 도입 후 힐스보로우 카운티는 ERSF 관리 내에 있는 아동 중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했다(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 제2절 아동학대 관련 국내 정책 방향과 변화

#### 1.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는 현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학대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 발견 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에 시범운영을 통해 2018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아동학대 사전예측 시스템 개편과 함께, 국가이동학대정보시스템 또한 개편될 예정이다. 2017년 1월1일부터는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가족관계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수급자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복지부 아동권리과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 2. 학대 고위험 아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전발견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

미국 힐스보로 카운티는 학대사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학대피해 아동의 사망 사례를 줄인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려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구축하는 정보 시스템에 학대사망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학대사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대사망의 원인 분석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이 사정 및 진단 척도의 문제이면 척도를 정교화 해야 한다.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면 정보공유 및 연계가 대응방안이어야한다. 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문제라면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아동학대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는 학대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할 수 있다.

특히 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고위험 아동인지 여부를 어느 시스템에서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신고로 학대 피해 아동이 발견된 경우, 과거에도 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학대피해 이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에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사건이 신고 되어 가정을 방문하였으나, 집안에 아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갔을 때 경찰의 정보시스템에 관련 가구에 대한 정보에서 아동의 학대 신고 유무가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경찰의 대응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잠재적 학대 아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대와 관련된 요인을 예측하여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정보 시스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학대아동 예측시스템 개발시 학대 고위험 아동이나 학대 사망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우선적으로 발견하는 방 안이 요청된다.

# 주요 선진국의 아동학대 업무 정보관리체계

제1절 영국의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정보 공유 제2절 일본의 정보관리체계 분석

# 3

# 주요 선진국의 아동학대 업무 < 정보관리체계 <

# 제1절 영국의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영국의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된 정보관리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기아동 보호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Safeguarding Children」의 개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경험한 사회적 충격과 아동보호의 책임성 논란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아동보호정책의 발전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체계가 아동의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 정보공유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의 전반부에서는 학대아동을 비롯한 위기아동 보호체계로서 「Safeguarding Children」의 과정적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Safeguarding Children」의 정보공유 업무관련 주요 쟁점을 고찰할 것이다.

#### 1. Safeguarding Children 도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00년 2월 25일 영국 사회는 이른바 클림비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접하였다. 학대로 사망한 여아의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여아의 시신에서 총 128개의 외부 압박과 잔혹한 폭행 상처가 발견되었다<sup>2)</sup>.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사망 직전까지 이 아동은 지역아동보호기관, 병원, 경찰 등을 통해 최소 10여차례는 외부의 학대의심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기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구도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론화되면서 기존 보호체계

<sup>2)</sup> 자세한 사건경위와 조사결과는 The Victoria Climbié Inquiry, L. Laming, 2003, https://www.gov.uk/ government/ upload를 참조하기 바란다.

의 허점과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영국의회에서 발표한 사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아동과 그 양육자가 접촉한 사회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응급실에서 조차아동학대 의심 소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린 여아의 신체 곳곳에서 발견된 심각한 폭력과 학대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지역내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및 유관 기관이나 관계자 간의 연계와 협력은 커녕 기본적인 정보공유조차 없었다. 이들 간의 연계 채널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동보호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가 해당 지역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위기의 아동, 학대의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은 양적으로도 불충분했고, 관련 예산과 인력은 늘 부족했다. 유관 기관간, 관련 행정체계 간의 절차적 비연속성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또는 신고사례의 접수, 조사, 조치, 모니터링, 사후관리의 기본적인 보호절차조차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특정지역에서나타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영국 내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를 사회정책 수립과 추진의 핵심 가치로 주창한 블레어 정부는 아동보호 전략을 포함한 아동정책 부문의 지원 확대와 전략적 정책개편의 의지를 Every Child Matters라는 정부녹서(HM Treasury, 2003)를 통해 천명하고, 아동법(Children's Act 2004)을 개정하였다.

Every Child Matters 녹서에서는 기존 아동보호체계의 실패 원인을 ①유관기관들 간의 조율과 연계의 부족, ②정보공유의 실패, ③책임 의식의 결여, ④일선 서비스 제공 인력의 부족과 효과적인 인력운용과 훈련체계의 결여 등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실패 요인을 해결하고,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을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각종 발달위기에 노출되어 특수교육 욕구가 있거나 행동장애, 방임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포함하면서 조기개입과 효과적 보호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다음 6가지 아동보호정책 개편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박세경, 2015, pp.80-81에서 재인용).

1) 정보공유의 향상(Improving Information Sharing): 지역 당국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명부와 이들 중에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접촉 이력 및 이용한 서비스 내용, 담당자 정보를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2) 공통 사정도구의 개발(Establishing a Common Assessment Framework): 모든 아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사정도구를 개발, 보급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핵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공유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수집의 중복 문제를 해결한다.
- 3) 전담 책임인력의 임명과 지정(Identifying Lead Professionals): 보호 아동이 1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할 경우 개별 아동 사례를 전담할 책임인력을 지정한다.
- 4) 전문 인력의 통합(Integrating Professionals): 위기아동의 선별 및 선별된 아동과 그 가족의 복잡한 서비스 욕구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통합을 추진한다.
- 5) **아동보호서비스 접근성 제고(Co-locating Services):**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은 학교,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 보육시설 내 또는 주변에 물리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6) **효과적 아동보호의 보장(Ensuring Effective Child Protection):** 유관기관은 모두 효과적인 아동보호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Every Child Matter 녹서가 발표되고 10여 년이 경과한 지난 2013년, 영국정부는 모든 아동의 안전보장을 전체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업무지침을 각 지방정부로 하달하였다(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2013).

이 업무지침은 아동과 그 가족이 대면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고유의 역할과 책임, 이들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기아동을 대면하는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개별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때 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초기 사정(assessment)과 정보의 공유, 보호조치의일정 수립과 개별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는 학대, 방임 등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표적화 하였다. 반면 새로운 아동안전보장체계(Safeguarding System)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차원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하는 국가 책임의 원칙이 보다 명료하게 착근되어 있는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영국정부는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아동의 건강과 발달상의 문제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안전하고 효과적 보호환경에서의 성장발달의 담보, 아동 개개인이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목적으로 아동안전보장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안전보장을 위한 협력(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지침에 따르면 아동안전보장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협력적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아동안전보장을 위해 관계자 모두는 본인 책임을 인지하고 각각의 고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당국의 기획, 조정 능력이 관건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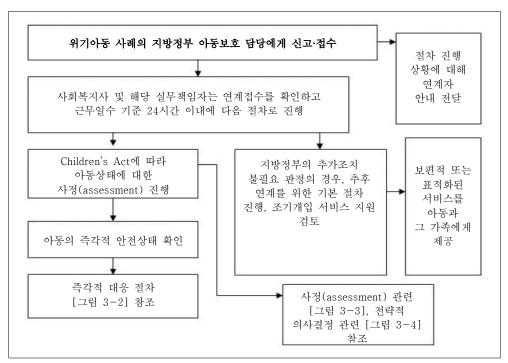
둘째,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아동중심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지침은 유관기관의 보호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요 유관기관에는 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 경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주거전담부서, 교도행정시설, 교통안전국, 아동가족법원, 민간기관 및 자원봉사조직,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서비스 흐름

아동의 위기 상황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안전보장체계 내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을 서비스 흐름의 차 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sup>3)</sup> 영국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서비스 진행과정은 필자의 선행논문(박세경(2015).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5년 4월, 통권 제222호, pp.79-89)의 일부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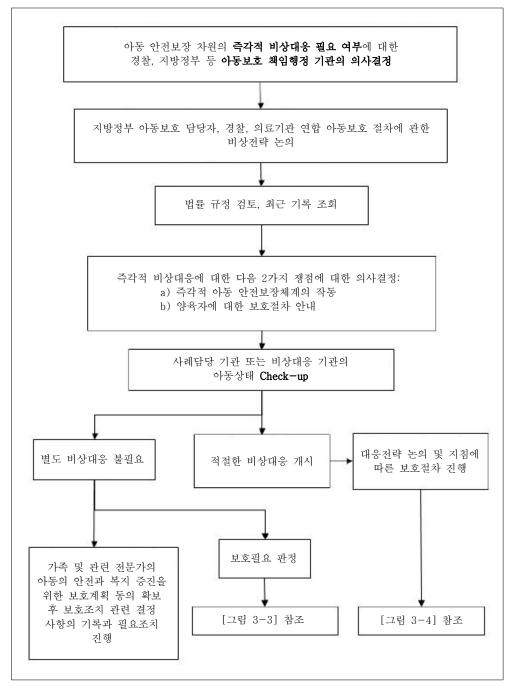
[그림 3-1]와 [그림 3-2]의 아동 안전보장 서비스 흐름도에 따르면 학대, 폭력, 빈 곤, 재난, 사건사고 등 다양한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이 지역 아동 보호서비스를 주관 하는 지역당국에 신고·의뢰되었을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초기 대상 판정의 과정에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보호 업무를 전개하도록 하고, 대상자는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그림 3-1] 위기아동의 지방정부 아동보호체계 의뢰 및 처리 절차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에서 재인용. p.30.

[그림 3-2] 위기아동의 즉각적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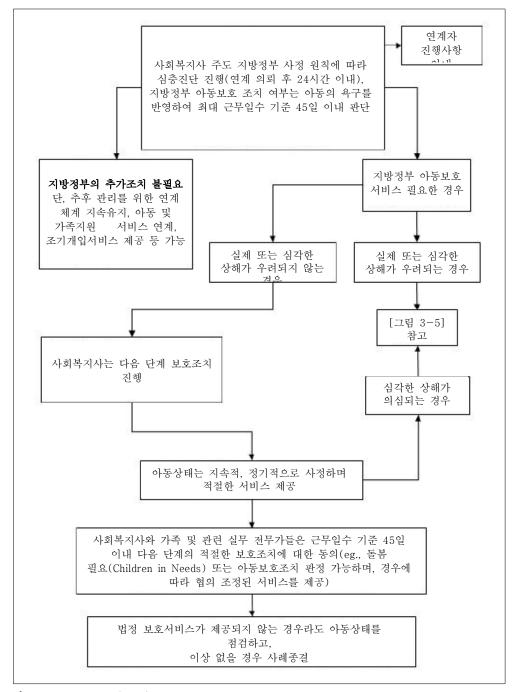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에서 재인용. p.32.

특히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례가 아닌 경우에도 즉각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작동되지는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의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조기개입과 사전 사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또는 해당 가족에게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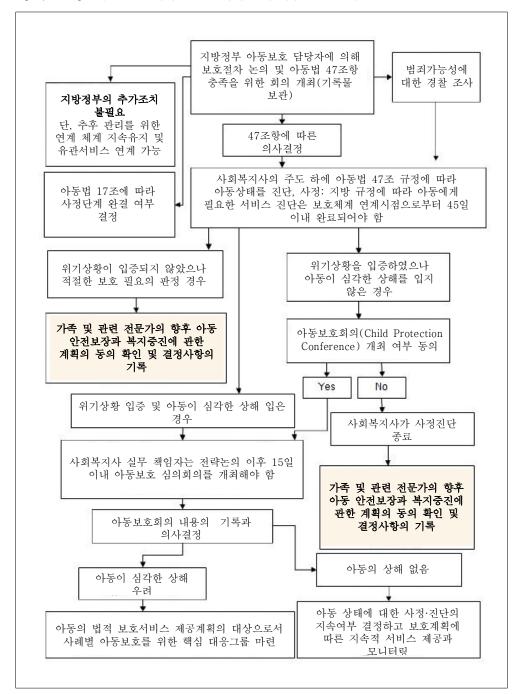
한편 즉각적인 보호절차가 전개되는 경우, 지역당국과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이 참여하는 보호전략 논의 절차를 거쳐 즉각적 조치 및 부모에게 보호조치 관련 결정 사항 등을 전달한다. 해당기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호 상태 및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즉각적 비상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담당자, 양육자가 향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응급 보호조치가 아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진단하고 45일의 경과기간 동안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아동보호 계획이나 아동상태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법정서비스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림 3-3] 참조).

그러나 보호전략 논의과정에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이거나 일반적 보호절차를 진행하던 중에도 치명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사회복지사의 주도 하에 아동의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아동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보호회의는 보호전략논의(Strategy Discussion)이후 15일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주도하여 아동보호 절차에 대한 판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아동보호회의에서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보호계획 및 절차가 결정되고 전담 보호조직을 선정하게 된다. 전담 보호조직은 최초 보호회의의 개최 이후 10일이내에 결성되어야 하며,이들을 통해 보호절차를 진행하고 3개월이후 보호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사례의위기정도를 재검토한다. 재검토 과정에서도 아동발달의 위기 요인이 제거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의 우려가 감지되는 경우, 다시 3개월 이후 재검토한다([그림 3-4], [그림 3-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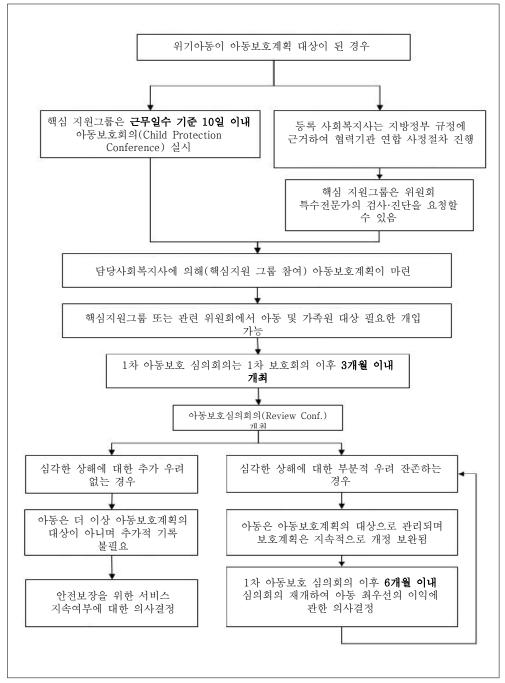
[그림 3-3] Children Act 1989에 따른 사례 진단 및 사정(assessment)을 위한 절차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에서 재인용.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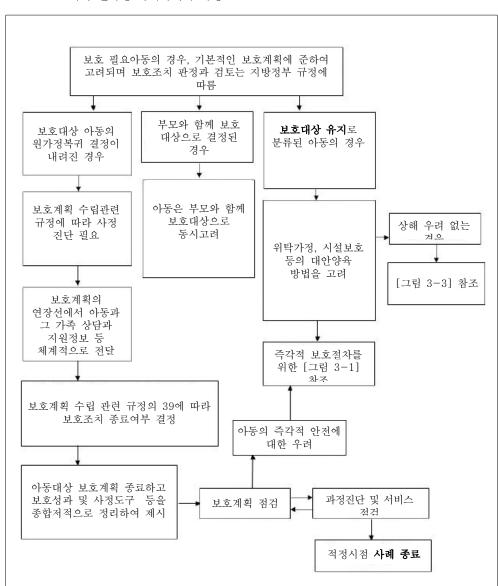
[그림 3-4]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전략적 논의 이후 보호 절차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에서 재인용. p.38.



[그림 3-5] 아동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 이후 보호절차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에서 재인용. p.48.



[그림 3-6] 이동보호회의(Child Protection Conference) 종료 이후의 보호 절차: 아동 안전보장체계 에서 원가정 복귀까지의 과정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에서 재인용. p.51.

#### 3. 아동보호과정에서의 정보공유 체계

#### 가. 아동안전보호체계의 기본 전제

영국 사회가 앞서 소개한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é)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도가 과거와 비교하여 높아진 것은 명백하다. 정부와의희는 치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그 고민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정보공유 이슈를 중심으로 영국의 논의 전개과정과 최근 정책추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영국의 아동 안전보장체계(Safeguarding System)를 견인하는 이론적 배경은 아동 발달의 '체계이론(system theory)'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대내외적 외부환경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전제로 하여 다음 세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동복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과 아동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상해를 입은 경우 강력한 사회적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지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 및 향후 대응방안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수준의 차이를 직감할 수 있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과업의 수행 중에 직면하는 업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근절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의 과편적 분절성과 연계·협력의 단절로 인한 한계와 위기 아동 보호책임의 논란에서 진전된 정책적 대응 논의가 미진한 현실에서 우리에게도 절실한 기본 전제이다.

셋째, 아동 보호업무의 과정적, 절차적 효율성과 결과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사망 사건에 직면하여 아동보호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관련 주체 간의 책임성 논란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과 보다 안전한 성장발달의 환경을 제공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동 안전보장 체계에서 영역별, 단계별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책임자의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책무성의 발현에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아동안전보장체계가 보호서비스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서비스 제공 절차를 강조할 경우 지나치게 관료주의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과 가족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다양한 욕구의 차별성을 고려한다면, 위기의 아동과 가족을 대면하면서 표준화, 규격화된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들의 욕구에 대한 대응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위기의 아동과 가족을 대면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관료주의적 서비스 제공 매뉴얼에 매몰되어 있을 경우, 이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 다차원성과 욕구의 다양성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안전보장체계 운영 지침이나 기관 간의 협업을 독려하는 서비스 제공 지침에서 불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거하여 아동과 가족을 대면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의적 판단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아동안전보장체계의 정보 공유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아동 안전보장체계에서 공유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 아동 안전보장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유관 기관 및 관계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지향하는 아동보호 관련 정보운영체계 개선 논의는 간단한 것이 아니 다. 위기아동의 발굴, 위기도 측정과 욕구의 사정,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는 다양한 차원에서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서비스 진입단계 또는 조기 발굴 측면에서 아동과 가족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는 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에 전문 보호서비스 기관에 의한 조기개입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동보호서비스를 최적의 시기에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정보의 공유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실무자의 핵심 과업 중의 하나는 아동과 가족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운데, 어떠한 정보를 얼마나 누구와 언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유된 정보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후 심각하고 장기간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호체계에 관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들은 사전적으로 공유한 정보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사전적인 원칙과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간혹, 위기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 서비스 이용 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우려는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료해질 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아동안전보장체계에서 정보의 공유과정 자체가 아동에게 위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책임성에 근거하여 정 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체계에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무자에게 제시하는 정보공유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자<sup>4</sup>). 영국 정부가 강조하는 아동안전보장체계의 정보공유의 기본원칙의 첫 번째는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과 인권 관련 법령들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정당한 정보 공유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보보호법은 민감한 개인과 그 가족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공한다.

둘째, 정보의 최초 수집 과정에서 위기아동과 가정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이유에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수집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명료하고 공개적으로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거나 부적절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전달을 위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공된 정보 공유에 앞서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는 정보와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만일 비밀 정보의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신 변의 위협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해당 정보가 공유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제공 에 동의했더라도 개인 또는 상황에 따라 정보 공유를 꺼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보호주체에게 요청할 경우, 요청하 는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sup>4)</sup> HM Government(2015). Information Sharing: Advice for practitioners providing safeguarding services to children, young people, parents and carers. http://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emnt\_data/file/419628 에서 인출. 2016.10.30

넷째, 정보의 공유는 대상자의 안녕과 행복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의 수 집과 관리 및 공유의 과정별로 누구와 어떤 정보를 어떠한 목적에서 공유하였는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요성(necessary), 비례성(proportionate), 연관성(relevant), 충분성(adequate), 정확성(accurate), 시의성(timely), 보장성(secure), 그리고 기록(record)은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절차적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적 전제가 된다.

정보 공유의 필요성(necessary)과 비례성(proportionate) 측면에서 담당자는 축적·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얼마만큼의 정보를 어느 수준에서 공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아동이나 가족이 처한 위기의 정도, 아동안전보장체계의 개입의 필요성에 비례한 정보의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보호서비스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아동안전보장체계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다른 서비스 주체의 서비스 전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아동안전보장체계의 성격이나 보호서비스가 지향하는 보호의 목적 수준에 준하여 연관성(relevant) 높은 정보들을 공유해야 한다.

공유하는 정보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adequate)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accurate), 객관성, 최신 정보의 공유가 기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을 배제한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간의 축적된 변화의 경로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공유의 시의성(timely)은 특히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아동 응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없거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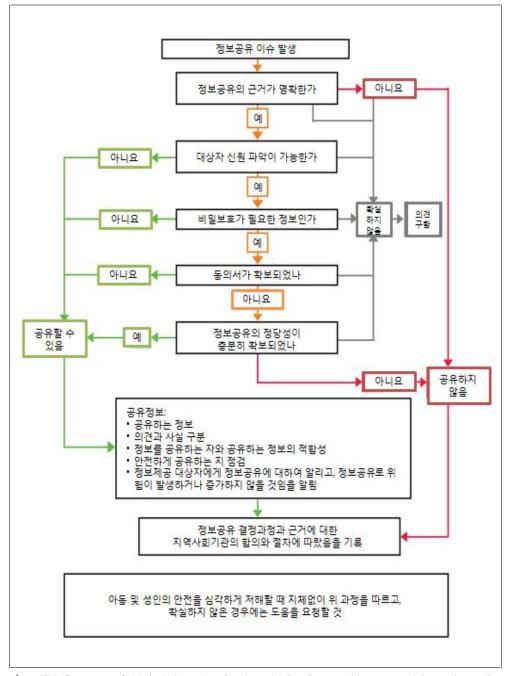
한편 정보공유의 안전성이 보장(secure)된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보관, 관리되어야 하므로 실무자는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동안전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정보의 공유가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안전보장체계 내에서 정보의 공유가 합의된 경우,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였는가에 대해 기

관의 절차와 규정에 준하여 해당 의사결정 내용을 행정문서로 기록해두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공유하지 않는 이유와 의사결정의핵심 요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기록물 보유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마다주요 정보의 보관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이상으로 관련 정보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아동보호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공유는 보호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위기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제도적 개입과 전문가적 서비스 전달의 성패를 가늠 짓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인력(담당자)들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공유의 과정과 공유할 정보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결정과 대응이 요구된다. 아동의 안전보장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에 관한 의사결정의 흐름을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인력이 수행해야 할 정보 공유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유를 위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가?
- 대상자 신원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 공유대상 정보는 비밀보호가 지켜지는가?
- 정보공유를 위한 동의서가 확보되었는가?
-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 적절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 정보공유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절한가?



[그림 3-7] 영국 아동 안전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 정보공유 과정의 핵심 의사결정 흐름도

자료: HM Government(2015). Information Sharing: Advice for practitioners providing safeguarding services to children, young people, parents and carers. http://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emnt\_data/file/419628 에서 재인용. p.12.

아동 안전보장체계에서 공유되는 정보 중의 기본 정보는 바로 아동과 그 가족이 직면한 위기도의 측정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한 사정 및 진단이다. 초기(최초) 사정(assessment)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는 서비스 대상으로서 아동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욕구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초기 사정의 영역은 크게 아동발달 욕구, 부모 부양능력, 가족 및 환경 등 3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 욕구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 아동의 건강상태, 교육, 정서적·행동적 발달상태, 정체성, 사회적 관계와 가족관계, 자기보호 수준 및 본인의 욕구와 의사 표현 정도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부모의 자녀 부양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보호내용, 안전 보장, 정서적 애착, 적절한 발달자극의 제공, 훈육방법과 부모기술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인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족·환경 영역에서는 가족사와 가족기능의 수행정도, 확대가족 내의 가족문제, 주거환경, 고용상태, 소득수준, 사회통합수준,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보가 향후 이들 대상을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 4. 아동보호 정보공유 시스템(CP-IS)의 구축

영국에서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 병원 등 건강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아동보호 정보공유(CP-IS: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Shar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Hea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2015). 아동보호 정보공유 시스템(CS-IS)은 각 지역 아동보호기관의 정보시스템(child social care IT system)과 국민건강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s)의 정보를 연계하는 전국 수준의 정보공유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학대위험아동과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 더 나은 보호와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ea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2015).

전국 수준의 아동보호 관련 정보와 아동 건강서비스 이용 정보, 특히 비예약 진료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학대위험 아동의 거주지, 거주지 이동, 위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지역의 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위험 아동의 거주지 이전,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아동보호 정보공유 시스템(CP-IS)에서

해당 정보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병원 응급실에서 비예약 진료를 하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는 진료받는 아동과 관련하여 학대경험이 있는지,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를 조회(query)할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국민건강서비스 번호(NHS number)
- 지역 아동보호 담당기관 명칭
- 지역 아동보호 담당기관 코드
- 지역 아동보호 담당기관 응급팀 전화번호
- 지역 아동보호 담당기관 근무시간, 전화번호
- 아동보호계획(CPP) 시작일
- 아동보호계획(CPP) 종료일
- 사후관리계획(LAC) 시작일
- 사후관리계획(LAC) 종료일
- 태아보호계획(Unborn CPP) 시작일
- 태아보호계획(Unborn CPP) 종료일

이를 통해 영국 전역의 약 12만 명의 학대에 취약한 아동에게 아동보호계획(CPP: Child Protection Plan), 사후관리(LAC: Looked After Children), 태아보호 (pre-birth CPP)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ea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2015).

아동보호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아동의 거주지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거주지 이전 이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아동의 위험상태를 알려주는 각종 위험경고 장치(예: 위험상황 표시 (flag))와 상세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 경험, 위험 정도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ea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2015). 학대위험 아동을 파악하여 아

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비예약 진료를 위해 병원 등을 방문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Hea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2015).

아동보호 정보공유 시스템이 효과적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보호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아동보호, 건강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아동보호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아동은 누구인지,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로 이사했는지, 어떠한 아동보호,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비예약 진료를 받은 아동의 경우 전산으로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불편함을 감소시켰다(Hea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2015).

## 제2절 일본의 정보관리체계 분석5)

1.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 가. 일본의 법령 정비 상황

일본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법률로서 '아동복지법 이 있으며,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의 의무(25조), 압수수색조사(29조), 일시보호(33조), 가정재판소에 대한 이의신청(28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아동상담소 등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아동상담소는 가정방문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정재판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절차가 어렵고 승인받기까지 수개월이라는

<sup>5)</sup>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 공식자료를 참조하면서 전문가의 의견 및 필자의 고찰을 덧붙여 작금 의 현황만이 아닌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양호대책협의회의 대응사례에 대한 소개, 전체 논지에 대한 조언은 오랫동안 아동상담소에서 아동복지사로 재직하면서 현재는 교토부(京都府) 스쿨소셜워커로 활동하고 계신 센다 토미히사(仙田富久)씨에게 많은 부분 협조를 구했다. 또한 한국어 번역은 북쿄대학 겸임 강사인 전병호씨의 도움으로 진행하였다.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일본의 각종 법령에서는 아동 등에 대한 개념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의를 중심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아동: 18세 미만의 자 ②영아: 1세 미만의 자 ③유아: 1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의 자 ④소년: 초등학교 취학에서 18세까지의 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입회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1990년 들어 점차 아동학대의 존재가 사회문제로 되면서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 의한 예방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4년에는 '아동권리조약'을 뒤늦게나마 비준하는 등 일본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상담소의 아동에 관한 상담처리건수는 통계자료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0년에 1,101건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4,102건, 1999년에는 11,631건으로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인이나 연구자들로부터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또한 매스컴과 여론 및 여야 정치권의 벽을 넘어선 국회의원들의 법령 정비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초당과적인 의원입법을 통해 의원들의 열의와 민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형태로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나. 아동의 권리조약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약이다. 18세 미만을 아동(어린이)으로 정의하고 국제인권규약(제21회 유엔연합회에서채택, 1976년 공표)이 규정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아동의 생존, 성장, 발달의 과정에서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조약은 전문과 본문의 54개 조로 구성되며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가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실현하고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제44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이듬해인 1990년에 발효되었다. 일본이이 조약에 동의를 표명하면서 조약의 효력이 발생된 것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94년으로 전 세계 195개국 중 158번째였다. 아동권리조약의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체약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보호자 또는 아동을 감호하는 자에 의한 감호를 받고 있을 때, 어떤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방치 혹은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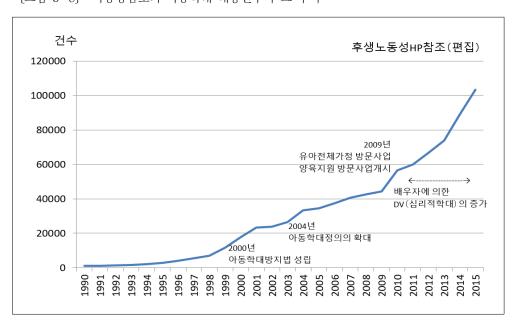
만한 대우, 부당한 대우 혹은 착취(성적학대를 포함)로부터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입법상, 행정상, 사회상 및 교육상의 조치를 취한다.

아동권리조약에는 이러한 기술이 있으며 아동의 학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는 비준 국의 책무로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외부적인 압력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2.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령 정비 상황

#### 가. 아동학대의 증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식자료는 2000년도(4~3월)6) 이후인데, 법령이 정비된 2000년 시점에서는 17,725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경향을 보여 2015년에는 아동 상담소에서 아동학대 상담 대응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대응건수와 그 추이

<sup>6)</sup> 연도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개정에 따른 대책의 강화

#### ①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2000년 11월 시행)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국민의 신고의무가 명시되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제1조와 제6조이다.

제1조 이 법률은 ①아동학대가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②그 심신의 성장 및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③일본의 장래세대의 육성에 있어서도 우려가 되는 바,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과 기타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을 발견한 자는 신속히 이를 시정촌 및도도부현에 설치된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와 아동위원을 통해 시정촌 및도도부현에 설치된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 ② 아동학대방지법·아동복지법의 개정(2004년 10월부터 순차 시행)

아동학대의 정의가 확대되어 동거인에 의한 학대의 방치도 방임의 정의에 덧붙여지고,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심리적 학대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시정촌의 학대대응역할이 강화되고 아동상담소만이 아닌 시정촌 양육지원창구가 학대신고창구에 추가되었다.

#### ③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복지법의 개정(2008년 4월 시행)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보호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재출석 요구, 나아가 입회조사를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면회, 통신 등의 제한,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치의 명확화 등학대를 받은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요보호아동대상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시정촌의 노력 의무로 하였다.

#### ④ 아동복지법의 개정(2009년 4월 시행)

생후 4개월까지의 유아가 있는 가정 전체를 방문하는 사업, 교육지원방문사업 등 양육지원사업을 법제화하고 시정촌에 그 실시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였다. 요보호아동대상지역협의회의 검토대상으로서 요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특정 임산부를 추가하였다.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양부모제도를 개정하고, 가정적 양호의 확충을 기하도록 했다. 이러한 학대의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의 충실화, 명확화를 추진하였다.

#### 다. 최근 아동학대 현황

위와 같이 2015년에는 아동상담소의 학대상담 대응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 큰폭으로 대응 건수가 증가한 지자체의 조사에 따르면 그 배경으로 3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첫째, 심리적 학대의 증가, 둘째, 심리적 학대의 증가 배경으로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사안(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신고 증가, 셋째, 아동상담 전국 전화번호(189)의 홍보와 매스컴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보도 등 국민과 관계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른 신고의 증가 등이다.

< 표 3-1>은 아동학대 대응건수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아동학대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심리적 학대가 그 정의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여 거의 절반가량을 점하게 되었다.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각각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보고건수는 모두증가). 한편 성적 학대는 10%에 미치지도 않아서 구미의 10~20%와 비교할 때 그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적 학대 문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아서 표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 표 3-2>는 학대상담 경로별 건수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의 상담 경로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가족, 이웃주민, 학교로부터의 상담이 각각 약 15%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 40%로 가장 높고 이웃주민에 의한 상담과 함께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학대정의의 확대, 특히 심리적 학대의 보고건수 증가가 이러한 배경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에는 아동상담소 전국공통다이얼 189가 시작되었기때문에 향후 이웃주민의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대응건수와 그 추이

연도	신체적학대	방임	성적학대	심리적학대	총수	
2006	15,364 (41.2%)	14,365 (38.5%)	1,180 (3.2%)	6,414 (17.2%)	37,323 (100%)	
2007	16,296 (40.1%)	15,429 (38.0%)	1,293 (3.2%)	7,621 (18.8%)	40,639 (100%)	
2008	16,343 (38.3%)	15,905 (37.3%)	1.324 (3.1%)	9,092 (21.3%)	42,664 (100%)	
2009	17,371 (39.3%)	15,185 (34.3%)	1.350 (3.1%)	10,305 (23.3%)	44,211 (100%)	
2010	21,559 (38.2%)	18,352 (32.5%)	1,405 (2.5%)	15,068 (26.7%)	56,384 (100%)	
2011	21,942 (36.6%)	18,847 (31.5%)	1,460 (2.4%)	17,670 (29.5%)	59,919 (100%)	
2012	23,579 (35.4%)	19,250 (28.9%)	1,449 (2.2%)	22,423 (33.6%)	66,701 (100%)	
2013	24,245 (32.9%)	19,627 (26.6%)	1,582 (2.1%)	28,348 (38.4%)	73,802 (100%)	
2014	26,181 (29.4%)	22,455 (25.2%)	1,520 (1.7%)	38,775 (43.6%)	88,931 (100%)	
2015	28,611 (27.2%)	24,438 (23.7%)	1,518 (1.5%)	48,693 (47.2%)	103,260 (100%)	

자료: 후생노동성 HP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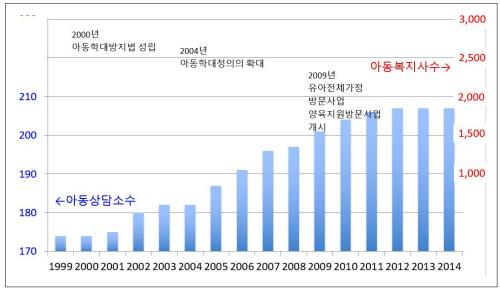
〈표 3-2〉 아동상담소의 학대상담 경로별 건수의 추이

연도	가족	친척	근린 주민	아동 본인	복지 사무소	아동 위원	보건소	의료 기관	아동복 지시설	경찰 등	학교 등	기타	총계
2006	5,700	1,042	5,475	452	5,672	472	374	1,522	1,472	2,726	5,688	6,728	37,323
	(15%)	(3%)	(15%)	(1%)	(15%)	(1%)	(1%)	(4%)	(4%)	(7%)	(15%)	(18%)	(100%)
2007	5,875	1,558	5,756	501	6,311	346	363	1,683	1,438	4,048	5,241	7,519	40,639
	(14%)	(4%)	(14%)	(1%)	(16%)	(1%)	(1%)	(4%)	(4%)	(10%)	(13%)	(19%)	(100%)
2008	6,134	1,147	6,132	558	6,053	319	282	1,772	1,552	6,133	4,886	7,696	42,664
	(14%)	(3%)	(14%)	(1%)	(14%)	(1%)	(1%)	(4%)	(4%)	(14%)	(11%)	(18%)	(100%)
2009	6,105	1,237	7,615	504	5,991	317	226	1,715	1,401	6,600	5,243	7,257	44,211
	(14%)	(3%)	(17%)	(1%)	(14%)	(1%)	(1%)	(4%)	(3%)	(15%)	(12%)	(16%)	(100%)
2010	7,368	1,540	12,175	696	6,859	343	155	2,116	1,584	9,135	5,667	8,746	56,384
	(13%)	(3%)	(17%)	(1%)	(12%)	(1%)	(0%)	(4%)	(3%)	(16%)	(10%)	(16%)	(100%)
2011	7,471	1,478	12,813	741	6,442	327	202	2,310	1,516	11,142	6,062	9,415	59,919
	(12%)	(2%)	(21%)	(1%)	(11%)	(1%)	(0%)	(4%)	(3%)	(19%)	(10%)	(16%)	(100%)
2012	7,147	1,517	13,739	773	6,559	293	221	2,653	1,598	16,003	6,244	9,954	66,701
	(11%)	(2%)	(21%)	(1%)	(10%)	(0%)	(0%)	(4%)	(2%)	(24%)	(9%)	(15%)	(100%)
2013	7,393	1,554	13,866	816	6,618	290	179	2,525	1,680	21,223	6,498	11,160	73,802
	(10%)	(2%)	(19%)	(1%)	(9%)	(0%)	(0%)	(4%)	(2%)	(29%)	(9%)	(15%)	(100%)
2014	7,806	1,996	15,636	849	7,073	281	155	2,965	1,714	29.172	7,256	14,028	88,931
	(9%)	(2%)	(18%)	(1%)	(8%)	(0%)	(0%)	(3%)	(2%)	(33%)	(8%)	(16%)	(100%)
2015	8,872	2,059	17,406	929	7,131	246	192	3,078	1,725	38,522	8,180	14,920	103,260
	(8%)	(2%)	(17%)	(1%)	(7%)	(0%)	(0%)	(3%)	(2%)	(37%)	(8%)	(14%)	(100%)

자료: 후생노동성 HP참조

#### 라. 아동복지사7)의 상황

아동복지사의 역할은 ①아동, 보호자 등의 아동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②필요한 조사, 사회진단(아동과 보호자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실시하며, ③아동, 보호자, 관계자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④아동, 보호자 등의 관계조정(예: 가족요법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3-9]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사 인원수의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HP참조

[그림 3-9]은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사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의 경우, 신규 상담건수는 73,802건이었으며 아동복지사의 인원은 2,829명 이었다. 따라서 신규 대응건수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나누면 1인당 26건이 된다.

실제 대응건수에 대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동복지사의 인원은 2000년부터 15년간 2.2배로 늘었지만, 2014년에 아동상담소가 대응한 아동학대 건수는 88,931건으로 2000년의 5배로 급증하고 있다. 가족동반자살 이외의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담당한 아

<sup>7)</sup> 아동의 보호 및 아동복지에 관한 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한 종류이며 아동상담소에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전문직이다(아동복지법 제13조).

동복지사의 담당건수는 2013년에 1인당 109.1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6.2.24, 아사히신문).

#### 마. 요보호아동대책협의회의 설치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 법률 제153호)을 통해 요보호아동 등에 관해 관계자 간의 정보교환과 지원협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법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의 핵심이 되는 조정기관을 두고,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구성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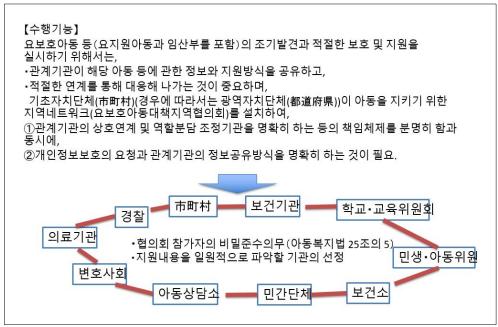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市区町村)는 이러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이 심신의 건전한 육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설치 및 적절한 운영이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적절한 연계가 불가결하다. 주요 관계기관 등의 개요와 연계는 [그림 3-10]에 나타나 있다.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방침'은 경찰청에서 각 도도부현 경찰 등으로, 법무성에서 전국의 법무국 및 지방법무국으로, 문부과학성에서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 등으로 각각 송부되었다.

2005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가 아동복지 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시정촌의 설치율은 겨우 4.6%에 지나지 않 았으나 순차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한 지자체가 증가하였다. 2008년의 거듭된 법개정을 통한 노력 의무의 부과조치를 통해 최근 2015년 조사에서는 99.4%로 거의 모든 지자 체가 협의회 설치를 완료하였다([그림 3-11] 참조).

그러나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전문직 배치현황의 경우, 본래의 전문직인 아동복지사 자격자를 배치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 중에서 약 45%에 머물고 있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은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보건사 등이 협의회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3-12] ~ [그림 3-14] 참조).

[그림 3-10] 아동을 지키는 지역네트워크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



자료: 후생노동성 HP참조

[그림 3-11]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설치상황의 추이(전국)



자료: 전국아동복지주관과장 등 회의자료, 후생노동성

13 114 100% 48 53 80% 690 223 306 60% 97 19 53 145 40% 237 670 182 20% 34 0% 例和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보육사, 교원, 아동지도원의 유자격자 ■ 준하는 자 (※<sup>×</sup>) ■기타 ■사회복지주사 ■ 아동복지사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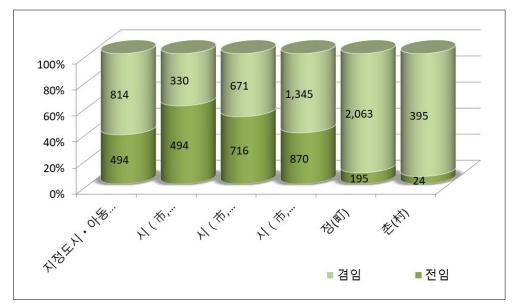
[그림 3-12]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에 대한 전문직 배치현황(2015년 4월)

자료: 전국아동복지주관과장 등 회의자료, 후생노동성



[그림 3-13]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직원의 배치현황(2015년 4월 정규직.비정규별)

자료: 전국아동복지주관과장 등 회의자료, 후생노동성



[그림 3-14]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조정기관직원의 배치상황(2015년 4월 겸.전임별)

자료: 전국아동복지주관과장 등 회의자료, 후생노동성

실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세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대표자 회의이다. 대표자 회의는 참가인원은 많지만 개최빈도가 적다. 참가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소개 및 강연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자가 당사자 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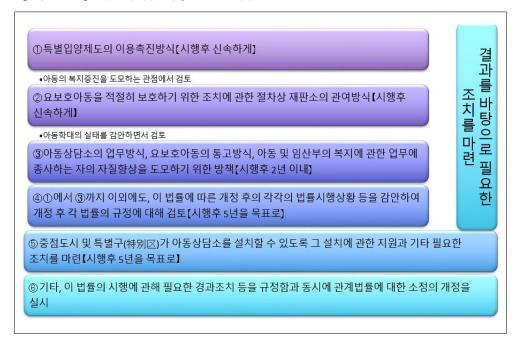
둘째, 실무자회의이다. 월 1회 정도 개최되며, 신규사례와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경과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아동상담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셋째, 개별사례회의이다.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회의이다. 조 사기관은 출석의 조정, 기록의 정리 및 배포, 역할분담의 확인, 모니터링과 원조상황의 확인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정 등을 수행한다.

#### 3. 아동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2016년)의 개요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학대 발생의 예방과 자립지원까지 일련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이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모자건강 포괄지원센터의 전국적인 전개, 시정촌 및 아동상담소 체제의 강화, 수양부모위탁의 추진 등 제반조치 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림 3-15]는 주요 개정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5]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개정의 개요

#### ① 아동복지법 이념의 명확화

아동은 적절한 양육을 받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자립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 기초자치단체(市町村) 각각의 역할 및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또한 친권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취지를 명기하였다.

#### ② 아동학대의 발생예방

시정촌은 임신기부터 양육기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모자건강 포괄지 원센터의 설치에 노력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 등을 파악한 의료기관 및 학교 등은 시정촌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기되었다.

#### ③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시정촌은 아동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 정비에 노력하고, 시정 촌이 설치하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조정기관에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도부현은 아동상담소에 변호사를 배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배치를 실시 하도록 하였다. 아동상담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학교 등은 학대피해아 동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 ④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부모와 아동의 관계 재구축 지원을 위해 시설, 수양부모, 시정촌, 아동상담소 등의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도도부현(아동상담소)의 업무로서 수양부모의 개척에서 아동자립지원까지 일관된 수양부모 지원을 규정하였다. 또한 자립원조홈의 경우, 22세 이하 대학생 등 취학중인 자를 그 대상에 추가하였다.

#### ⑤ 시행기일

이상은 2016년 10월 1일 또는 2017년 4월 1일을 그 시행일로 하였다.

#### 3. 아동학대와 정보관리

#### 가. 기초자치단체(市町村) 간의 정보공유

2014년 12월, 아동학대대책의 전개방식에 관한 전문위원회에서는 '거주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의 기초자치단체(市町村)간 정보공유에 대한 도식을 제시하고, 거주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市町村) 내의 관계부문(모자보건, 복지, 교육위원회 등)에 의한 정보의 공유와 조사 등을 실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전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기초자치단체(市町村)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市町村)의 모자보건 및 아 동복지 등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실제 거주실태가 파악될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市町村)와 주소지 기초자치 단체(市町村)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거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이러한 거주불명아동의 정보공유방식으로는 담당했던 각 지역의 아동상담소가 전국의 중앙아동상담소로 정보를 제공하는 CA(Child Abuse, 아동학대)정보연락시스템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후관리(follow-up) 기간 중에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할 경우,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에 케이스를 이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로 전출할 경우에는 전출 거주지를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의 CA정보연락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이전 거주지 아동상담소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인과 함께 신거주지에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CA정보는 연락표 한 장에 아동의 이름과 전출시기를 적어 팩스로 송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CA정보는 각 중앙아동상담소가 팩스발송 등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거주불명아동의 조사, 발견, 보호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의 아동에 관한 정보를 관계부국과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것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대응사례로서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8)인 요코하마시(横 浜市)는 각 구의 아동가정지원과(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사무국)가 호적과 및 타기 관의 정보를 집약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요코하 마시(横浜市)로 전입한 기록이 없는 아동에 대한 조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 체에게 동일한 시스템을 확대시키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up>8)</sup>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市) 중에서 정부령으로 지정된 도시.

#### 나. 기초자치단체(市町村) 내의 정보공유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산과의료와 정신과의료의 연계 및 모자보건 담당자와의 연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아동복지법상 특정임산부가 규정되면서 간호연락표 등의 의무기록을 통한 병원(산과)에서 지역(보건)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구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다시금 임산부에 대한 면접단계부터의 관여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서는 산과의료 및 소아과·정신과 의료의 병원 내 연계와함께 지역보건·아동복지의 협동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산부의 관점에서는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건직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다. 정보연계 미비로 인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

2016년 10월에 오사카부(大阪府) S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살 남아가 거주불명이후 사망으로 확인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일가가 이전에 거주했던 M시에서는 사망한 아동의 여동생에 대한 학대를 의심하여 가정을 정기방문대상으로 지정하였지만, 시청내 각 부문 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아가 36개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S시로 이주했지만, S시에서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3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것이다.

M시에 살고 있던 2013년 12월, 당시 1살 11개월의 남아를 유아원<sup>9)</sup>에서 데리고 왔으며, 그 후에 태어난 차녀는 2015년 2월에 화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던 경위가 확인되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은 M시 학대부문 담당자는 한 달 후인 3월에 이 가정을 정기방문대상으로 지정한 뒤 3회에 걸쳐 방문했지만 남아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시의 건강검진부문 담당자는 동년 7월 이후, 학대정보를 모

<sup>9) 1</sup>살 미만의 영아(보건상 안정된 생활환경의 확보 등 기타사유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를 포함)를 대상으로 양육과 함께 퇴원 후에도 상담 등 기타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37조)

른 채 남아에게 42개월 건강검진을 받도록 전화연락을 취했다. 가족과 통화는 했지만 검진 자체는 6회에 걸쳐 연기되었으며 48개월 건강검진시점 직전인 동년 12월에 S시 로 이주했다.

그러나 미검진에 대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S시의 건강검진 담당자가 이주를 파악한 것은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인 2016년 3월로, 여동생의 18개월 건강검진 미검진사실을 확인했을 때였다. S시의 직원은 지속적으로 자택을 방문했지만남아와의 면회거부가 이어져 동년 5월, 경찰과 상담하여 본 사건이 발견되었으며 부모의 진술에 따라 남아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오사카부(大阪府)가 2014년에 책정한 지침에 따르면 36개월 건강검진을 최장 2개월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대담당부서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건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기초자치단체(市町村) 간은 물론, 그 안에서의 연계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라. 거주불명아동 문제를 통한 지역연계 문제의 고찰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고 소재확인도 불가능한 영유아의 현황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독자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742개 기초자치단체(市町村) 중 총 335개 기초자치단체(市町村)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그 수가 무려 4,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2013.12.30. 요무우리신문).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보도를 접하면서 후생노동성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주소불명 아동의 수가 2014년 10월 시점에서 141명이었다고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채 아동을 데리고 가족 전체가 이주를 했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주실태를 알 수 없는 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은 직권으로 삭제된다. 이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에서 말소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아동의 수를 정부(총무성)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토대로 ①전출입에 대한 파악이 개별 아동상담소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증이 없고, ②기초자치단체(市町村)를 초월하는 연계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개별적인 팩스를 통한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 중앙아동상담소의 CA정보연락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초자치단체(市町村)를 초월한 아동학대연계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태파악의 방식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향후과제로 남겨져 있다.

기초자치단체(市町村) 내의 연락에서는 3중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개별 사례회의'를 통해 요보호아동지역대책협의회가 정보의 공유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성멤버 외의조직 및 개인과의 연계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정비 및 제도설계 변경 등의 결과, 임신시점에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를 특정임산부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학대가 발생되기전에 위험성 및 요지원아동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 5. 아동학대의 본질적 과제

일본에서는 학대사망아동의 사인을 검증하는 데스리뷰제도(CDR)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검을 포함한 아동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의 죽음이 학대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사 혹은 사고사 등으로 모호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아동학대의 최전선으로서의 기능이 기대되는 아동상담소의 존재방식이다. 아동상담소는 아동발달을 평가하고 지적장애의 유무나 발달장애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통해 양육과 아동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부모나 교사를 위한 문자 그대로 '아동상담'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중심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어 아동학대 상담 대응건수가 1990년에 1,000여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100배인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학대피해로 인한 사망 등 매우 중대한 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임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상담소의 기능은 최근 20년 동안 상당부분 변해 왔다.

전후 상당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환경은 부모의 책임이었다. 사회의

관여는 최소한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는 사회의 관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사회의 변화가 가족의 균열을 불러왔으며 새로운 형태의 아동학대를 창출했다고도 할수 있다.

이런 와중에 부모에 대한 지원과 아동의 보호라는 상당부분 상반된 문제를 아동상담소 한 기관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과 그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시기에 봉착해 있다.

## 수 아동학대 정보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 정보공유 및 연계 현황 제 3절 정보공유 및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

# 4

### 아동학대 정보관리 체계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보호권은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 "국가는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양육자의 양육을 받는 동안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UN 아동권리협약 제 19조)는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아동보호의 영역은 아동, 가족, 국가 간의 관계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의 법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성을 갖고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제도화된체계는 각 사회문화별로 독특한 형태로 구체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의 개념화와 보호법, 그리고 보호체계의 본격적 도입과 발전은 불과 20여년이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도입된 이후, 아동보호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으며 국가의 공적인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로서 많은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정책대상을 분리하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취약한 공적 기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세경 외, 2014).

본 장에서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정보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1절에서는 먼저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특히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및 과편성을 ①아동보호대상의 분리문제, ②학대위기 아동의 예방 및 발견, 조사 및 사정, 판정 및 개입, 사후관리단계로 이어지는 아동보호의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작동방식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과 책임성 문제의 해결은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통합적 정보관리시스템은 아동보호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아동보호기관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가 되기도 한다.

제2절에서는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로 정보공유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아동학대의 신고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어떠한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어떠한 정보를 수 집, 관리하고 있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 제1절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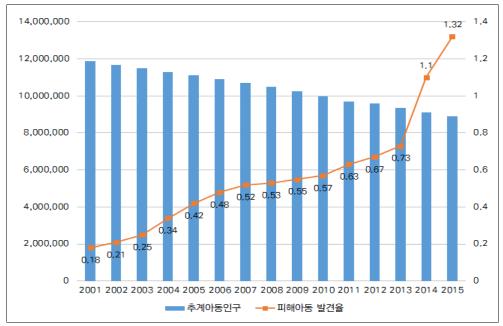
#### 1. 학대피해아동의 현황파악 미비

우리나라의 공적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입되면서 신고·조사 중심의 체계로 구축되었으며, 2001년 이후 매년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이 집계되었다.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서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5년 1.32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학대로 판정, 조치된 고도의 학대위기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만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 부모 또는 아동에 의해 보고된 아동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는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집계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에서는 학대 및 방임발생률이 25.3%로 나타났다. 2013년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서는 42.2%,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에서는 46.1%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학대 측정지표 및 선별도 구 등 측정방법, 조사 설계, 조사대상자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80%(2015년 기준)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의 가해 또는 피해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사회적 응답 편이 (social response bias)의 영향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확한 빈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의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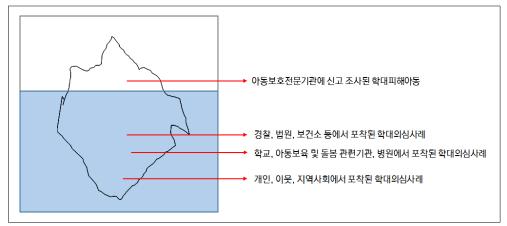
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on agencies)에 신고된 아동학대신고율(annual rates of reported child maltreatment),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판정된 비율(rates of substantiated maltreatment), 부모 또는 아동의 자기보고에 기초한 아동학대 발생률 등 학대발생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그림 4-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2001-2015)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그림 4-1]에서 도식화한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율과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정된 발견율(또는 보호율)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학대피해 아동의 규모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 전체 중에서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그림 4-2] 참조). 수면 아래 잠겨있는 아동학대피해 및 위기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 법원, 병원, 보건소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아동보호 정보 및 업무의 연계 및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아동보육 및 돌봄 기관, 이웃과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여 학대 아동에 대한 발굴과 예방체계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림 4-2] 아동학대 및 방임 빙산이론(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자료: 류정희 외(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미발간 자료),

#### 2. 보호대상아동의 분절화의 문제

#### 가. 보호대상에 대한 선별주의적 접근의 한계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한 UN 아동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for the Child) 제19조에 의하면, "국가는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양육자의 양육을 받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아동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착취와 같은 모든 종류의 위기에 대해 대응하고 예방하기위한 다양한 부문들(multisector)에 걸친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구조, 기능 및역량의 총합"으로 정의된다(UNICEF, 2010).

아동보호는 아동과 부모(가족), 지역사회, 국가 간의 일정한 방식의 관계성을 담고 있으며,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상대성을 보인다. 예컨대,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협의의 개념으로 아동의 다양한 위기를 '학대 및 방임'으로 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적이며 제도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스웨덴, 독일 등 서구유럽에서는 아동보호는 모든 종류의 사회

적 폭력과 위험을 포괄하는 부적절한 발달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체계를 의미하며 아동보호에 대하여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하고있다. [그림 4-3]은 아동보호체계의 범주가 이러한 접근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으로 보호를 받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협의의 체계로부터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위기를 가진 모든 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대한 이해 및 정의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주된 대상은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부모 및 가정으로부터 양육 및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Looked—after Children)을 의미한다. 지원대상아동은 부모 및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으나 사회 및 국가의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Children in Need)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앙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부모로부터 이탈된 요보호아동(Looked—after chil—dren)과 학대피해아동(abused childeren)으로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또한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4-4] 참조).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2조). 요보호 아동 수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에 의해서 2000년대 초반 1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경제가안정화됨에 따라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8,590명, 2015년 기준 4,503명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6). 2015년 요보호아동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빈곤, 실직, 학대가 63.6%로 가장 높았고 미혼모 20.7%, 비행, 가출이 8%, 미아, 기아가 7.6%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별 추이는 과거 요보호 아동의주된 원인이었던 미혼모가 2000년 4,000명에서 2015년 2,866명으로 감소한 반면, 빈곤, 실직, 학대가 2004년 이후 가장 주된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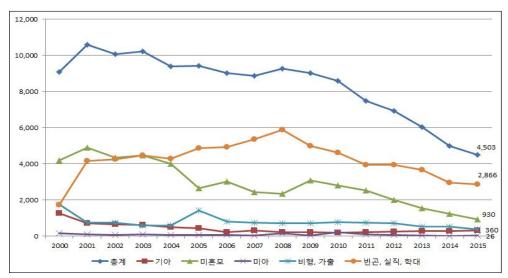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요보호 아동의 정의 및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요보호 아동과 학대피 해아동의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빈곤과 학대 및 방임이 가장 직접적 인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아, 기아, 비행, 가출의 경우 역시 빈곤과 학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는 요보호 아동의 간접적인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은 동일하게 학대의 다양한형태의 위기에 노출된 아동으로서 모두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단일한 시스템 속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보호받는 아동
(Looked after
Children)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Children in Need)
모든 아동

아동복지체계

[그림 4-3] 아동보호체계의 범주 [그림 4-4]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범주

자료: 류정희 외 (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4-5] 발생원인별 요보호아동 현황 (2000~2015)

아동복지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각 연도

'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규정된다. 지원대상아동은 저위기도의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지원체계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다.

요보호아동과 학대피해아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협소한 아동보호체계 하에서 지원대상아동은 사회적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빙산의 아래에서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학교 무단결석아동,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 등의 이름으로 잠재적 학대위기 아동군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위기의 아동의 규모에 대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2014년 기준 사회적 보호를받고 있는 아동은 5만여 명 이하로 전체 아동인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했다. 여기에는 15,000명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2,500여명의 일시보호 및 공동생활 가정아동, 1,000여명의 입양아동, 11,000여명의 가정위탁아동, 6,800여명의 아동학대 판정아동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68,000여명의 소년범을 포함하면 우선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은 111,000여명(전체 아동의 1.26%)이다. 전체 관심·취약아동 79만 1천여 명 중 아동보호체계의 적정보호대상 표적화비율 30%를 적용하여 정책대상으로삼아야 할 잠재적 학대위기 아동은 약 23만7천여 명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의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할 아동의 규모는 34만8천여 명으로 현재 보호대상아동 규모의 약 8배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표 4-1⟩ 아동보호체계 보호대상 범주

위기아동 유형	규모	구분	현행 Gateway
시설보호 아동	15,916		양육시설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그룹홈 거주 아동	2,438		그룹홈*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133	시 설 보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아동	197	모 호 대 상	상담소, 경찰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쉼터 아동	640	Ö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소년범(강력범 제외)	68,236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가정위탁 아동	14,584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학대피해 아동	6,774	재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신고 112
국내입양 아동	922	보 호 대	입양기관*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소년소녀가정 아동	796	상	읍면동 및 시군구청
요보호 아동		6,926	아동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우선 보호대상 아동	110	0,636	(전체 아동대비 1.26%)-요보호아동(6,926명 제외)
학교폭력 피해아동	63	2,000	학교, 경찰서, 병원, 117 신고 상담센터, Wee 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이혼가정 아동	10	0,312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일부), 사회복지관 등
빈곤아동	30-	4,672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구 아동	32-	4,2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관심·취약 아동	791,184명		(전체 아동대비 8.49%)

주: 이상의 표에서 활용된 통계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료: 박세경 외(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p.122

#### 나. 연령별 아동대상의 구분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관련법에서 기준이 되는 아동보호정책 대상인 아동의 연령규정은 상이하며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표 4-2> 참고). 이처럼 동일연령대의 아동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나누어지며 대상별로 주관부처 및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분립된접근방법 상의 한계로 사업 시행부처별로 기능상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필요한서비스가 전혀 공급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양상 등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표 4-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규정 비교

만연령(세)	0~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4
학령 분류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아동복지법		만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만 9 ~ 24세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드림스타트		출생 ~ 12세까지														
초등돌봄교실		1~	~3학1	년												
지역아동센터		초 <sup>-</sup>	등학교	고 재	학~경	중학교	2 후	년까	지							

자료: 박세경 외(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p.36

빈곤아동 사례관리서비스의 아동연령별 불연속성의 문제가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빈곤아동 사례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만 0세~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2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이 주요대상이 된다.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아동이 만 12세가 지나면 드림스타트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지역단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해당아동의 사례를 인계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서비스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학대와 방임에 매우 취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또는 보호서비스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영유아가정을 중심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home visiting programs) 등 영유아를 위한 학대예방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정방문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 가.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적 분절성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적 분절성과 파편성은 보호대상의 분절화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토대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된 형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운영되어 왔으며, 다른 공공 및 민간의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의 부재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가족보호체계 등으로 분립되어 있다. 이들 보호체계들은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 위기유형 및 사업의 주관부처나 정책 배경 등에 따라 별도로 형성되었다. 각각의 다양한 게이트웨이가 존재함으로써 보호업무의 일관성 및 지속성 부재,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 개선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아동보호체계가 청소년보호체계 및 가족보호체계와 분립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및 가족지원체계가 아동보호체계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아동중심, 가족지원 중심, 예방중심이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대응의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족지원체계가 아동지원체계와 분립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둘째, 청소년보호체계와 아동보호체계를 관장하는 부처 및 서비스 영역 간의 칸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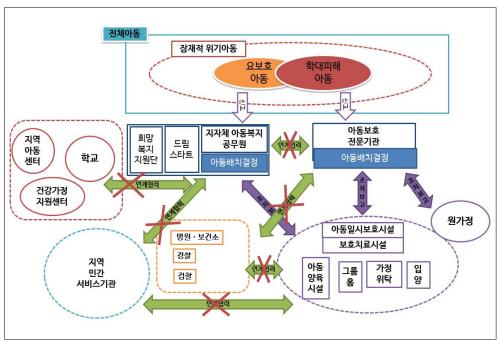
가 존재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양산 및 생애주기와 연동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체계의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드림스타트센터의 경우 사업 대상이 만 12세 미만의 빈곤취약계층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만 12세~만 18세 미만의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두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연계는 미비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분리에따른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분립이 존재하며 이들 시설 간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연계·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된 아동보호대상의 분리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와 시도,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공무원과 대안양육체계(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등)를 축으로 작동하는 별도의 체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왔다([그림 4-6] 참조). 시설, 그룹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아동등 시설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 국내입양, 소년소녀가정 등 재가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 현재 대안양육시스템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은 11만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다양한 보호체계의 분립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아동보호의 전 과정, 계획수립과 상담치료,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예방 및 보호의 과정에서 서비스의 지속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안양육시설 중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의 전체 절차가 전개되는데, 주요 관련주체인 미혼모 지원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 간의 연계 협력이 취약하다. 가정위탁보호체계는 지자체와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설보호는 아동생활시설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아동의 부적응 문제로 인하여 다른 대안양육체계로 아동을 재배치할 경우,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체계내, 체계 간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동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처음부터 다시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아동보호업무의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기아동 DB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보공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과정을 모니터 링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서비스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아동보호과정을 매뉴얼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과 연 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분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안양육체계, 통합사례 관리체계가 지역의 아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의된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과 서 비스제공의 파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해 야 할 것이며, 현행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재편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지역 시군구의 아동 또는 청소년 전담공무원 및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위기아동보호체계 통합창구를 마련하여 아동보호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군구를 기초로 한 아동학대 예방컨트롤타워는 학대위기아동의 신고접수 의뢰의 단계에서 통합적 게이트웨이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공공성을 담보로 한전문적 조사, 사정 및 배치작업과 위기유형 및 위기도 수준에 따른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림 4-6]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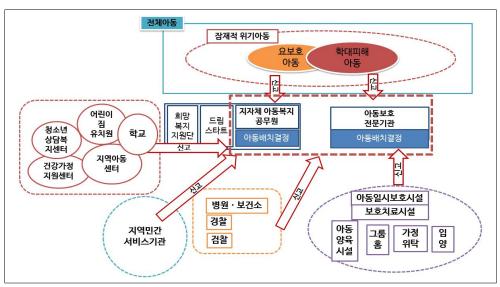
자료: 류정희 외 (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구성함.

#### 나.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단계별 문제점

#### 1) 예방 및 발견단계

신고 및 조사를 기초로 하는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시스템에서 예방 및 발견단계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발견은 신고의무자 또는 일반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대사례의 사전예방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적 학대의심사례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2016년 연달아 발생했던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하여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정부 차원의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대위기아동의 사전발견과 예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학대의심사례의 신고 및 발견은 아래의 [그림 4-7]과 같이 아동의 생활공간 및 아동보호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칠 수 있다. 잠재적 학대위기 아동은 아동의 주생활공간인 가정,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간에서 포착될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입양 등의 가정양육시설, 병원 또는 보건소와 경찰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다.



[그림 4-7] 예방 및 발견단계

자료: 류정희 외 (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구성함.

< 표 4-3>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학대위험요소별로 구체화하여 담당 부처와 기관 별로 범주화한 것이다. 아동보호의 사전발굴 및 예방단계에서 정보 및예방, 보호업무의 연계를 위하여 지자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관련부처별 아동보호업무협조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3⟩ 사전발굴 및 예방단계의 연계 협력기관

구분	주요내용	관련기관	주무부처		
	건강검진기록/예방접종기록	질병관리본부			
	자녀동반 자살시도여부	병원 응급실, 정신건강증진센터			
	학생정신건강 검진기록	정신건강증진센터			
	입양아동 중 파양경험 여부	중앙입양원			
	가정위탁 신청여부	사회보장정보원			
	시설 생활/이용 아동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아동양육수당 미신청 여부	사회보장정보원			
	기초수급, 차상위 등 복지급여 수혜이력가구 여부	사회보장정보원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서비스 미이용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종료 여부 (재학대 위험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ul><li>가정폭력, 성폭력 경험여부</li><li>(가정폭력, 성폭력시설 내 보호여부)</li></ul>	경찰청, 해바라기센터	경찰청, 여성가족부		
예방 및 발견단계	- 가정폭력 신고조사기록이 있는 가정의 아동		1 6/17 T		
	부부갈등 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중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육비 이행여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여성가족부		
	위기가정 청소년 정보시스템	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시스템	7/8/157		
	다문화가족 여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의무교육 미취학				
	- 장기결석여부	교육청. 하국교육학술정보위			
	- 잦은 전학	<u> </u>	교육부		
	- 학교부적응		11.41		
	정신건강, 학교폭력, 취약가정 관련 사례관리	We센터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기록	교육청			
	- 근로무능력 가구 여부	고용정보워	고용노동부		
	- 실직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	20020			
	결식 또는 푸드뱅크 이용 여부	각 시군구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통일부		

자료: 최현수 외(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방안-아동학대 위험요인 및 연계정보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미발간 자료)에서 재구성함. 또한 예방 및 발견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과 예비부모 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은 아동학대의 가장 기본적인 1차적 예방기제가 될 수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학대예방교육,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위기가 있는 가정 및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지원, 부부 및 가족상담, 빈곤가정 자활 등 다양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민간의 다양한 아동복지지원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지역의 학대위기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시스템에서 중요한 민간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조사 및 사정단계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조사 및 사정단계는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아동복지공무원과 대안아동양육시설 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안아동양육시설 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가 별도로 작동하고 있다. [그림 4-8] 에 나타난 것처럼 현행시스템에서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연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안양육체계 간의 연계 및 협조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의 미비로 대안양육체계와 병렬적인 관계에 놓이며, 조사 및 사정단계에 필요한 공공의 강제성 등 직접적인 권한행사능력이 결여되어 커다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의 A구의 경우 2016년 아동학대사례가 전년대비 급증하였으나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간의 정보연계, 보호업무연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이다.

전체아동 잠재적 위기아동 학대피해 요보호 아동 아동 아동보호 지자체 아<del>동복</del>지 어린이 희망 전문기관 드림 공무원 청소년 스타트 유치원 학교 아동배치결정 지원단 상담복 지센터 지역아동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병원 · 보건소 보호치료시설 경찰 입 양 그룹 검찰 양육 위탁 서비스기관 홈

[그림 4-8] 조사 및 사정단계

자료: 류정희 외 (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구성함.

따라서 이러한 분절화된 이원적인 학대위기아동의 보호체계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게이트웨이(gateway)로 통합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의 다원화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관기관의 사례발굴 및 사례접수 통로는 그대로 열어두되, 아동보호통합정보관리시스템를 구축, 운영하여 위기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정평가자료, 사정결과 및 서비스 이행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정보의 보안수준별로 공유함으로써 모니터링기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게이트웨이는 연계된 양육 및 서비스 제공체계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기능정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서비 스 제공 위탁기관들과 동일한 병렬적 구조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권한행사가 가능 한 공공 주도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박세경 외, 2014). 이를 통해 요보호아동, 위 기청소년, 가족의 보호원칙과 친권제한 등 아동보호개입 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공통 으로 적용하고, 원가정 분리 아동의 일시 및 긴급보호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조사 및 사정단계에서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매뉴얼화하고 지역단위 아 동보호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컨트롤타워로서 기초지자체 아동보호과정의 조사판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아동보호 심의 및 협의기구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지방정부의 요보호아동보호 업무는 1인의 극소수 전문 인력이 담당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연속성,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를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전체 지자체의 36.4%에 그치는 수준이며, 그 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아동인권포럼, 2016). 전국 2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2015년 기준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은지자체가 40.5%로 나타났으며, 연 1회만 소집되었다고 응답한 지차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고, 아동정책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퇴소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아동복지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2 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자지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바(<표 4-4> 참조), 지자체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고(동법 제12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제13조의 2항). 현행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이기때문에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심의회 개최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가 전문성을 결여한 소수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소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아동·청소년 보호관련 현장실무자 및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김지연 외, 2015).

지역협의회 참가자의 비밀보호의 의무 변호사회 인간 아동복지전문가 변호사회 기육아동센터 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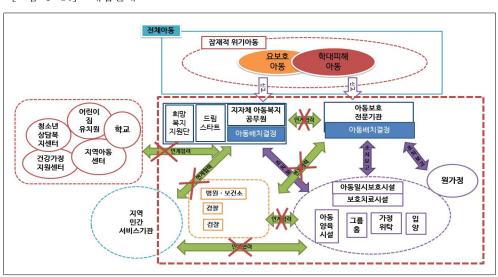
[그림 4-9] 지역아동복지협의회의 구성

자료: 일본도쿄도(2014). 「아동방지대책 경과」에서 수정함.

마지막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종합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복지심의회의 실무위원회(현재의 소위원회)를 확대하여 상설적인 통합사례관리기구인 지역아동복지협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드럼스타트와 유관기관 중사례관리 기관 간의 업무협력은 대상자 연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유사사업(예: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과의 협력·연계 부족 및 정보공유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아동복지협의회 참가자의 개인비밀 보호 의무를 명확히 강제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보호 유관기관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조직을 운영하여 아동보호 업무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와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

#### 3) 개입단계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개별적인 서비스제공주체가 각각의 개별적인 체계 내에서 정해 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또는 시설입소 과 정 단계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안양육제도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관이 부재하다. 기존의 각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입양, 가 정위탁, 그룹홈 또는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하며 각 분야 간의 연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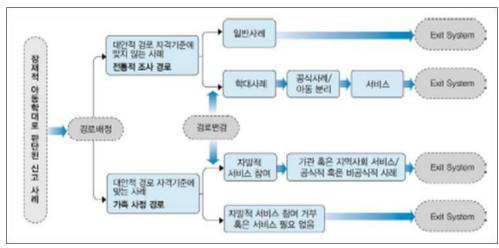


[그림 4-10] 개입단계

자료: 류정희 외 (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구성함.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환경은 가정보다는 시설보호 위주로 제공되었으며 원가정 지지 및 복원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혼모(부) 의 친부모 양육지원체계는 취약한 수준이다.

둘째, 1차 사례판정 및 위기사정 이후 위기상황의 중증도에 따라 잠재위기사례와 위기의심사례, 고위험 위기사례 및 일반사례 등으로 단계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체계 하에서는 고위험도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 외에 학대위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사례유형에 따른 보호서비스 제공방식을 차별화하고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서 이루어진 차등적인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등적 대응체계는 전통적인 아동보호체계와는 달리 저위험혹은 중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대신에 가족지원을 위한 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강화서비스를제공하는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조사 및 처벌을 중심으로한 징벌주의적 접근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그림 4-11] 참고).



[그림 4-11] 차등적인 대응시스템의 아동보호 흐름도

자료: 이봉주 외(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상과 같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가족복지 전담 공무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및 드림스타트를 기초로 하여 구축된 지역의 아동보호 종합컨트롤타워의 연계조정의 역할을 이원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도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다양한 복지 및 법률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 관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저위험도, 중위험도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등 지역사회 공공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위기수준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서비스제공체계의 구축 이 필요하다.

#### 4) 사후관리단계

아동보호체계에서 사후관리적 개입은 학대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구조적 분절성과 인력 및 자원의 한계로 인하 여 사후관리적 개입 서비스 제공이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분절성 중에 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업무 간에 보호대 상아동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체계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의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종료 이후 해당 아동의 사정결과 및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지역사회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할 아동복지담당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사후관리의 핵심은 학대위기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가진 취약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공공과 민간 가족지원서비스 체계의 단절로 가족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주민센터(희망복지지원단)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취약가정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이 서로 단절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중산층 대상문제예방 중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가 취약계층 가족지원서비스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과 서비스 중복 문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잠재적 위기아동 아동 아동 아동보호 지자체 아동복지 어린이 전문기관 공무원 집 유치원 청소년 학교 스타트 아동배치결정 지원단 아동배치결정 상담복 지센터 지역아동 건강가정 센터 지원센터 원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병원 · 보건소 보호치료시설 경찰 지역 가정 그룹 입 양 민간 검찰 양육 시설 위탁 서비스기관 홈

#### [그림 4-12] 사후관리단계

자료: 류정희 외 (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구성함.

#### 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책임성 강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보호의 기본대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이다. 주 표적대상은 아동발 달과 가족적, 경제적 문제를 가진 잠재적 취약위기아동이 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과 함께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최소한의 표적대상으로 하고, 가족해체의 위기, 가족의 경제적 물질적 위기에 직면한 아동을 잠 재적 위기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보호체계 내에서 차등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행 신고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처별로 분립하여 작동하는 아동·청소년·가족시스템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학대위기아동의 예방, 발견, 조사 및 사정, 개입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분절화된 시스템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통합게이트웨이를 시군구에 설치한다. 이러한 과정은 분절적인 체계의 재편과정이기도 하고 아동보호체계

의 책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셋째, 통합게이트웨이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위기아동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정보공 유 프로세스 개선 및 서비스 이용과정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아동보호 프 로세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과 서비스의 파편성을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적 보호체계가 담보해야 할 아동보호의 책임성 부재에 있다. 결국, 아동보호 체계의 분절성과 함께 책임성의 부재는 아동보호체계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고할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분립하여 작동하는 청소년보호체계 및 가족보호체계를 연계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현행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개별적인 시스템, 즉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 가정위탁, 시설, 그룹홈 등 대안양육체계의 연계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현행 시스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아동보호는 가족과 국가의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이다. 국가의 책무성은 아동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 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한 통합 정보관리 체계(DB)의 구축,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공서비스 예산지원 등의 영역에서 실현되어져야 한다.

[그림 4-13] 아동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주요책임영역



- 폭력과 착취에 대응하는 법
- 조사 및 기소
- 아동의 원 가정 분리 및 배치관련 법적 사회적 절차
- 아동보호 위반사례를 모니터링 하는 정보시스템
- 공식적 돌봄, 학대신고체계에 대한 인허가, 모니터링
- 정부의 아동보호담당자의 행동강령 실행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감독
- 사회적 돌봄 및 법적 체계에 있는 아동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체계
-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
- 출생등록

자료: UNICEF (2010) Adapting a Systems Approach to Child Protection: 류정희 외(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2절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 정보공유 및 연계 현황

이 절에서는 학대아동 보호 서비스 단계별로 정보공유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힐 것이다. 아동학대 업무 과정별로 정보연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이유는 학대아동 보호와 관련된 각 기관의 업무의 차이로 인해 참여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한다. 반면 경찰은 신고접수, 조사 단계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에서 수집한 정보 중의 일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보를 서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각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참여단계와 업무흐름을 참고하여 정보공유의 현황과 필요한 정보내용을 단계별로 서술하였다.

#### 1.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 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아동학대는 신고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 서비스 수급에 대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개별 정보시스템으로 보유 관리한다. 사전발견 단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연계 통합하여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관리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발생 신고 접수와 관련된 정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해바라기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 조사 사정단계에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과 같은 조치결과에 대한 정보는 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는 전화나 인편을 통해 관련 정보 입력이 이루어진다. 개입단계에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수급이력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 수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 변인 조사를 통해 이루지고 있다. 2017년 1월부터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담당자 확인).

개입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배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원가정과 분리될 경우에는 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과 같은 배치가 결정된다. 해당 아동에 대한 배치 내용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 그러나 배치가 완료된 이후 아동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에서 각각 관리, 운영된다.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입은 공공자원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력 정보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당사자에 대한 상담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수집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아동의 주 사례관리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정보를 관리 운영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가정위탁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입양기관 등에서 담당한다. <표 4-5>는 보호 단계별로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표 4-5⟩ 보호단계별 관련 정보시스템

보호단계	정보시스템
사전발견	아동행복지원시스템(2018년 운영예정)
신고접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조사사정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입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사후관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2018년 운영 예정),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전산정보시스템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및 조치,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사후관리와 교육 홍보 등과 같은 업무 수행 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운영하는 시스템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

〈표 4-6〉 국가아동학대시스템 관리 정보

분류	소분류	상세내용
대상자관리	아동	사례ID, 성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가족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학대행위자	성명, 나이, 아동과의 관계, 고소고발이력, 장애여부
	사례관리현황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사례판정, 학대유형 등
	신고접수	신고내용, 재신고여부 등
	현장조사	_
	사례판단	위험도
		조치결과
	조치결과	응급/임시조치
		피해아동 보호명령
		고소/고발/사건처리
가 네 카 파		친권제한/정지/상실
사례관리	21112	서비스 계획
	서비스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_
	사후관리	_
	시키키키	이관 발신
	이관관리	이관 수신
	사례담당자관리	_
	사례회의록관리	-
	수퍼비전관리	-

분류	소분류	상세내용
사업관리	지역자원관리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비스 제공 유형
사업단다	교육/홍보/협력사업	-
통계관리	통계/보고서조회	-
업무관리	공지/자료실/메일 등	-
사이트관리	계정/사용자관리	-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용지침 p2., 정영철 외(2014) pp.132-133. 자료 재구성.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표 4-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기본 정보, 학대행위자 정보, 사례관리에 대한 현황 정보 등의 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는 사례 ID,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학대행위자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본 정보, 고소/고발 이력, 장애 여부 등을 관리한다. 사례관리 정보는 사례번호, 신고접수일, 학대 피해 아동 성명, 사례판정, 학대유형과 최종조치, 재신고 여부, 조치결과, 이관 여부 및 이관 발신 및 수신 확인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서 수집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대상자 상담 및 주변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수급이력의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연계하여 운영할예정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인터뷰).

#### 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정보시스템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에서 고유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그림 4-14] 참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사, 송치, 범죄경력 조회, 형사사건 기록, 공소장, 영장청구서, 판결문, 재판 결과 등 관련한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표 4-7> 참조).

[그림 4-1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요



자료: 형사사법정보포털 http://www.kics.go.kr 2016.12.20. 인출

〈표 4-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단계	관련정보
	사건접수
거구	의견서
경찰	송치서
	범죄경력조회
	형사사건 기록(사건번호,인적사항, 종국결과)
검찰	기소 전까지 경찰에게 사건 관련 정보 제공
	공소장, 불기소 결정문, 각종 영장청구서, 형집행 지휘
	영장발부 및 기각정보
법원	공판기일정보
	판결문
	형집행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법무부	재판결과
	영장 및 집행지휘 내역
	위탁보호소년 입출관리와 신상관리
	소년보호정보시스템 구축

자료: 신성식(2015).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pp.145-146 내용 정리.

####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의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분야 행정시스템을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하고 있다(사회보장정보원, 2016).

정보수집 건보공단 연금공단 국세청 국방부 국토부 고용정보원 정보가공 정보생산 정보수집 행정자치부 정보분석 정보제공 (정보보호) 데이터 베이스 정보원 전형료면제 인적정보 수급이력정보 정보관리 한국전력 1 정보제공 소득재산정보 자격정보 정보원 전기료감면 시스템운영 교육부 범정부화면 행복e음화면 0 시스템모니터링 장애,오류대응 자격확인서비스 개발과제발굴 정보활용 기초생활 수급자 등 개발계획 수립 지침(업무)분석 개발관리 내공사 개발테스트 자료보정 사용자지원 민원상담, 신청, 수급자 신청, 급여지급, 적정 수급자 관리 지자체 전달체계 타부처 전달체계

[그림 4-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2016.12.20. 인출.

지자체의 복지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행복e음이며 중앙부처의 복지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보건복지부, 2013:22).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은 여러 부처 복지사업 정보와 자격정보,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복지 서비스 수급 이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사회보장정보원, 2016). [그림 4-15]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도를 나타낸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수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서비스 제공 이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관리하는 복지서비스는 기초연금. 장애인활 동지원,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 대상자, 유아학비, 보육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대 상자, 의료급여, 자활,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 기초생활수급자, 기초교육수급자, 기 초생계수급자,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4-8>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표 4-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정보 현황

구분	관련 정보
대상자 정보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번호 등
수급 및 수급이력 정보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신청자시설정보 (입소자,종사자,대표자,시설장), 아동청소년요보호아동, 장애인대상자, 의사상자, 사할린 대상자, 장기요양 신청자(등급판정), 노인일자리서비스 수혜자, 유아학비 대상자, 보육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자활대상자,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체 종사자, 보건지원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등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6), 행복e음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www.ssis.or.kr. 2016.12.20. 인출.

####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에 근 거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이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에서 의미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아동복지법 제 52조, 노인 복지법 31조, 장애인복지법 31조 등에 의한 시설을 의미한다. 아동과 관련한 시설<sup>10)</sup> 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이용시설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 시설과 같은 생활시설 등이 있다. [그림 4-16]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개요도를 나타낸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맞춤검색 ww.w4c.go.kr 행 정 통합이력 · 회계 ○ 노인생활 ○ 노인복지관 ○ 장애인생활 ○ 장애인직업재활 ○ 아도생활 ○ 사회복지관 ○ 정부 3.0 o 후원 ○ 아동생활 ○ 자역자활 시설평가 www.gov3,0,go,kr <sup>©</sup> 지역아동 。 인사/급여 o 한부모가족 o 노숙인 • 경북행복지도 이 시군구 보고 ㅇ 정신보건 happymap,gb,go,kr · 창원시 맞춤검색 복무요원 com,w4c,go,kr

[그림 4-1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도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2016.12.20.인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아동생활시설,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대상자 기본정보와 아동의 학교에 대한 정보, 대상자 보호자에 대한 기본정보, 시설 이 용정보, 시설 입소 및 퇴소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표 4-9>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sup>10)</sup>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 시설 중 청소년시설, 보육시설, 노인교실, 경로당 등은 제외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시스템사용안내, http://www.w4c.go.kr. 2016.12.20. 인출.)

⟨표 4-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구분	관련 정보
대상자 정보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건강정보 등
아동보호자	보호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시설이용 정보	시설 입소/퇴소 정보, 아동학교관리, 사후관리 등
아동관련 대상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소개 http://www.w4c.go.kr. 2016.12.20. 인출. 정 영철 외(2014) pp153-159.

#### 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의해 구축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와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관련 행정정보를 전자화하여 개별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다(나이스대국민서비스, 2016). 시스템구성에 대한 개요는 [그림 4-17]에 제시하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는 학교 DB에서 관리한다. 학교DB는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사항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 학교 출결, 학교생활기록, 아동의 전입, 전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표 4-10> 참조).

〈표 4-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DB 관리 정보

구분	관련 정보
학생 기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가족사항 등
학교 정보	전입관리, 전출관리 등
학적관리 정보	출결관리, 학교생활기록 등

자료: 2016년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연수교재. http://lib.keris.or.kr. 2016.12.20. 인출.

[그림 4-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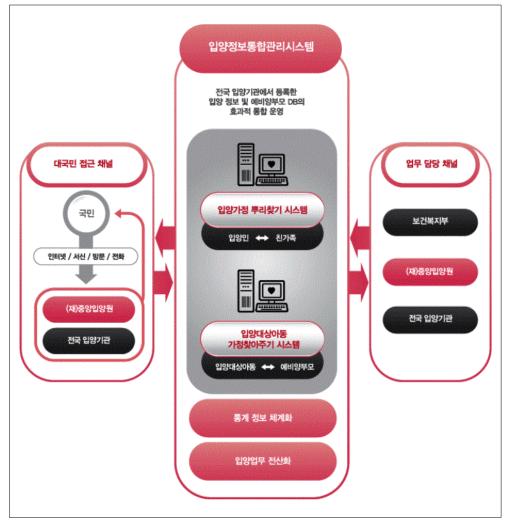


자료: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교육행정정보화개요. http://www.neis.go.kr. 2016.12.20. 인출.

#### 사.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입양특례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구축,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관련 개요도는 [그림 4-18]에 나타나 있다.

[그림 4-18]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요도



자료: 중앙입양원(2016),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www.ksadoption.or.kr. 2016.12.20.인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입양인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입양 및 파양이력,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다(<표 4-11>참조).

⟨표 4-1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분	관련 정보
입양인	성명(입양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혈액형, 혼혈유무, 건강이상, 건강이상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인수일자, 기관고유번호, 가족유형, 장애등급판정, 보호유형, 조치일자, 조치구분, 국적(국외입양), 국외협력기관(국외입양), 성명(입양후), 입양신고일(국내입양), 출국일(국외입양), 국적취득일(국외입양), 파양이력, 아동고유번호
친생부모	친부성명, 친부주민등록번호, 친모성명, 친모주민등록번호, 주소(친모), 연락처(친모), 취약계층구분(친모), 입양사유(친모), 입양동의여부(친모), 정보공개여부(친모), 장애등 급유무(친모), 주소(친부), 연락처(친부), 취약계층구분(친부), 입양사유(친부), 입양동의 여부(친부), 정보공개여부(친부), 장애등급유무(친부)
입양부모	양부성명, 양부생년월일, 양모성명, 양모생년월일, 양부국적, 양부종교, 양부직업, 양부 학력, 양모국적, 양모종교, 양모직업, 양모학력, 양친주소, 양친연소득, 양친천자유무현 황, 양친연락처, 양친주택종류, 양친부채, 친가정조사신청일

자료: 중앙입양원(2016) 입양실무메뉴얼 p70.

#### 아.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근거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은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은 위탁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위탁전 주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친가정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의 인적사항, 위탁현황, 위험사정, 위탁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정영철 외, 2014, pp.128-129). <표 4-12>는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2⟩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관리 정보

구분	관련 정보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위탁전 주소, 친가정 기본 인적사항, 서비스 제공내용, 위탁현황, 사례이관, 자립계획, 자립수준, 친가정에 대한 위험 사정, 친가정 내 위탁중인아동 등
위탁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가족관계, 위탁부모경력 등
사례관리	사례진행현황 및 모니터링, 사례관리 담당자 등
자립지원현황	자립계획 및 자립수준에 대한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자료: 정영철 외(2014), pp128-131 정리.

#### 자.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관리하는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은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사례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와 사례관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표 4-13> 참조).

⟨표 4-13⟩ 해바라기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

구분	관련 정보
성폭력 피해아동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사례관리 정보 등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http://www.womannchild.or.kr. 2017.1.3. 인출.

#### 2. 단계별 정보공유 및 연계현황

아동학대 보호 단계에 따른 정보 공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상담원, 아동학대 관련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변호사, 지역아동보호센터의 팀장, 해바라기센터 부장, 세이브더칠드런 관장, 경찰, 의사, 학교 사회복지사, 아동복지 전 담 공무원 등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관련 정보 공유의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절에서는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 보공유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가. 예방 및 사전 발견 단계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적으로 학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신고 전에 예측하여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업무는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대 발생 이후에 신고를 통해 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사후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상시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2016년 말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관련 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연계해야 할 정보와 관련 정보시스템을 탐색하고<sup>11</sup>), 추가적으로 예방 및 사전 발견 단계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① 장기결석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찾아내기 위해서는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예측,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아동은 학대로 인한 감금 또는 가출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장기간 결석한 아동 또한 학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의무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육적 방임이기도 하다.

#### ②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 접종 기록이 없는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과 필수예방 접종 기록이 없는 영유아 또한 의료적 방임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건강검진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을 통해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사전에 발견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장 실무자나 학계에서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 영유아기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면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고, 영유아 스스로 자신을 보

<sup>11)</sup>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관련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대 결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 쉽다. 따라서 영유아 학대는 신고로 인한 개입보다는 사전에 찾아내어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③ 임산부의 건강진료 기록, 약물치료, 알코올,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정보학대를 받은 아동은 어릴수록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특히 임신 중에 행해지는 의료적 방임은 발견하기 더욱 어렵다. 임신 중 알코올, 약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코올과 약물중독은 임신기간 동안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적 학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산모의 정신건강은 출산 이후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약물이나 알코올 치료 및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정보를 연계하여 잠재적 학대영유아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 ④ 가정폭력 신고 가족 내 동반아동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고, 가정 내에 동반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 신고 가족 내 동반아동 유무에 대한 정보는 잠재적 학대 위험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다.

#### ⑤ 학대 고위험 및 사망 가능성 정보

아동학대의 예방 및 사전 발견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고위험 및 사망 가능성 등이다. 심각한 경우일수록 발굴시기와 개입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대 고위험 아동은 사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 요하다.

잠재적으로 학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학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아동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현재 거주지 정보는 동일 대상 아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정보는 아동학대 보호 어느 단계에서든 공통으로 보유해야 할 정보이다. <표 4-14>는 사전 발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연계할 정보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4〉 사전 발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분	필요정보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기본정보	<ul><li> 아동 인적 사항 및 가족관계</li><li> 거주 현황</li></ul>	• 가족관계 등록부(행정자치부) • 주민등록(행정자치부)
사전 발견	잠재적 학대 위험 아동	임산부의 알콜, 약물, 우울     영유아 건강검진 누락 아동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누락 아동     양육수당 미수령 아동     동반 아동 있는 가정폭력 사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장기결석 아동     학교 장기결석 아동     기타 학대 예측요인	• 정신건강증진센터행정정보 • 국민건강보험 통합관리시스템(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복지부) • 가정폭력정보시스템(여가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복지부) • 나이스(교육부) •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시스템(복지부)
	고위험 아동/사망 가능성 높은 아동		정보시스템 없음

#### 나. 신고 및 접수단계

신고를 통해 학대가 접수되면 아동의 학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가 요구된다. 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입의 긴급성 여부가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신고 및 접수 단계에서는 신고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피해아동의 위험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신고접수 통로 또한 다양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 ① 위험도(재학대, 고위험 및 사망 가능성) 및 학대행위자 정보

현재 아동학대 신고경로는 안전신고센터(119), 경찰서(112), 아동보호전문기관(112), 해바라기센터(1366)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동학대 접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어느 기관으로 접수되더라도 재학대 및 아동의 위험도에 대한 정보는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신고 접수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현장조사 수행 이전에 학대 행위자의 폭력전과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아동의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임과 동시에, 현장조사 단계에서 동행하는 경찰 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의 안전과도 관련이 높다<sup>12)</sup>. 현장조사 이전에, 고위험 아동, 사망가능성 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예측과 함께 학대 행대행위자에 대한 범죄경력 정보를 제공을 통해 현장조사팀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필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표 4-15>는 신고 및 접수 경로별로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나타낸다.

#### ② 성학대 관련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2014년 특례법 이후 경찰과의 협조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과의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일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성학대의 경우 신고경로 가 해바라기센터로 되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관련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지 않 는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것도 어렵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성학대 관련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지만, 해바라기센터 사례와 중복되는지 어느 정도나 누락되는지 현황을 알 수 없다.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는 학대 신고 의무자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와 학대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소한 고지할 필요가 있다.

#### ③ 가족관계, 거주지 이전 등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와 갱신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개입전략을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족관 계는 대부분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데, 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허위로 알 리는 경우도 발생한다(예: 이서현 보고서 중 계모가 친모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친모로 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가족관계의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는 행 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 등록 정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2017년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연계 할 예정이다. 거주지 정보의 경우에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주민등록 정보가 연

<sup>12) 2010</sup>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사례관리차 현장 방문하였으나 학대 행위자에 의해 두개골이 파 열되고 행위자는 옥상에서 뛰어 내린 사건이 있었다(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인터뷰 내용).

계가 되어 거주지 이전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정보가 갱신되어야한다.

⟨표 4-15⟩ 신고경로별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신고경로	필요 정보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112(경찰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학대이력(재학대) * 고위험, 사망위험 아동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112(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고위험, 사망위험 아동 * 학대행위자 범죄경력 정보 *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정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행정정보시스템
1366(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 정보시스템	* 학대이력(재학대) * 고위험, 사망위험 아동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2017년 구축 예정)	* 잠재적 학대 가능성 * 학대이력(재학대) * 고위험, 사망위험 아동	* 국민건강보험 통합관리시스템 * 가정폭력정보시스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나이스 *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시스템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다. 조사 및 사정 단계

아동학대 조사, 수사, 기소 및 판결업무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 조사업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사 및 기소업무는 경찰과 검찰, 판결업무는 법원이 담당한다. 이 중에서 수사, 기소업무와 판결과 관련된 정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찰, 검찰, 법원 이 함께 사용한다.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에 관한 사정과 개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수사나 기소과정에서 경찰, 검찰 등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와 판사들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가 다르다. 일부 검사와 판사는 학대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정보 공유가 용이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판결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사, 기소과정이나 판결과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여부에 대한 정보는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하는가와 언제 복귀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학대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가해자의 구속, 불구속 기소여부 등이 원가정 복귀와 단기시설 또는 장기시설 입소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4-16>은 조사 및 사정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연계해야 할 정보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6〉 조사 및 사정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조사 및 사정 유관기관		필요 정보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조사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	<ul> <li>고위험, 사망위험 아동</li> <li>학대행위자 범죄경력 정보</li> <li>가족관계정보</li> <li>기존 서비스 이력 정보</li> <li>가해자의 사법처리 여부 및 사건 관결 정보</li> </ul>	가족관계(주민등록전산정보: 2017년 연계 예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사 및 기소 업무	경찰 및 검찰	• 학대이력(재학대) • 학대행위자 범죄경력 정보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판결 업무	법원	• 학대피해 아동 이력 정보 • 학대가해자 이력 정보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 라. 개입단계

개입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권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산으로 연계된 실시간 공유는 아니기 때문에 학대행위자나 학대 피해 아동과의 상담, 주변인 조사를 통해 학대행위자와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아동학대 문제는 빈곤, 가정폭력, 이혼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현재 제공받는 서비스나 부족한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17>은 개입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7〉 개입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개입 유관기관	필요 정보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아동보호전문기관	• 공적 서비스 수혜 이력 • 타 기관에서 서비스 수혜 이력	• 국가아동학대 전산시스템
그룹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가정위탁	• 학대 이력	<ul><li>성학대정보시스템</li><li>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li></ul>
쉼터		
입양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해바라기센터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 마.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재학대 위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재학대 위험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보는 정보 취득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에 위치하는 아동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복지관 치료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 기관이 있다. 여러 기관을 조정하여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제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정보가 한 곳에서 관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기관들은 스스로 정보를 공유되거나 재학대 위험을 추적, 관리할 수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구청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의경우 아동학대 업무가 주요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정보가 중점 사례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표 4-18>은 사후관리 단계에서 필요한정보와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표 4-18⟩ 사후관리 유관 기관 간의 필요정보와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사후관리 유관기관	필요 정보	연계 필요 정보시스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구청	9-1-9-11-0	
해바라기센터	<ul><li>재학대 가능성</li><li>아동의 안전</li></ul>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 아동행복지원정보시스템
드림스타트	• 아동과 헌선 • 아동과 행위자 이사 정보	• 아동생극시원정보시스템
학교	70 7 0 77 7 7 7 0 32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 제3절 정보공유 및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

#### 1. 아동학대 관련 법령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타인에게 정보 제공시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성년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 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학대행위자가 동일하기 때문이 다. 문제는 학대행위자에게 정보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지 만, 학대행위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 내에서도 사건 담당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것이 형 사소송법의 규정이다. 이러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사, 수사, 판결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은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정 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이나 관련 업무 경험기간에 따라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 한해서는 아동보호기관에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에게는 수사 및 판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제3자에게 학대행위자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경우 '개인정보 공동활용법'처럼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대와 관련된 법령이 다양하고 관련된 모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공유의 어려움과 법 제정 또는 개정시 고려할 부분을 진술한 것이다.

"정보공유법을 아예 새로 한다던지, 그런 사회복지 정보공유법이든 무언가를 새로 해서 다 일일이 뜯어고치기 어렵다면 아예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타 법의 규정에 있을 때는 그 법을 적용하라는게 있으 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대상들의 정보는 공유하도록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근데 우리가 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아동복지법에 한 줄 넣고, 어디에 한 줄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관련된 '복지시스템구축에 관한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단일법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나씩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특별조항을 만들어야 하지, 지금처럼 각자의 법률만 보면서 서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신이 없으니까 법률상에 한 줄씩만 넣고 있는 상황인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을 만들어서 한 번 그렇게 통과를 시켜야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2.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 체계

아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전산정보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필요한 정보는 전화나 인편을 통해 취득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내에서 기관과 시설 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내 기관 정보를 보유하고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현실적인 방 안으로써 기관 간 정보 공유는 지자체 단위의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잠재적 학대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학대 고위험 아동과 사망 위험 아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에 대한 리뷰가 진행되어야 한다. 학대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는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망진상 조 사위원회를 관계 부처, 기관 실무자 및 학계 관계자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학대 사망 진 상조사권한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사례가 발굴될 경우, 아동의 이전 학대 경험에 대한 정보, 고 위험 또는 사망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는 어느 시스템을 통해 신고되더라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고경로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보호 유관기관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매우 다양하다.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공통 업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연계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관별 합의를 통해 입력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기관 간의 욕구사정에 대한 공통기준과 공유정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언급한 것이다.

"지아센(지역아동센터)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을 받아야 아이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것인가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 니기 때문에...그런데 지금은 거의 구두로 정보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가 사례관리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사례관리인 거에요. 사실 이런 건 좀 아니 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이 표준화가 되 어서, 어디에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 3. 아동학대 보호 인력의 전문성 증진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것은 관련 담당자의 인식과 전문성에 따라 다르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직무 경험이 높으면 필요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공유와 연 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인터뷰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인식과 전문성에 따라 정보공유와 연계에 대한 협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OO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장, 원장님께서 엄청 꼼꼼하게 아이를 살핀 거잖아요. 본인이 관리까지 하시면서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희가 요청하 면 정보를 많이 주시긴 하세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의무자 교육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복지계열이라 그런지 정보를 잘 주시기는 하는데.."

"APO(학대전담경찰관)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다보니까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게 생기고 나서 몇 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피보직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랑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이런 걸 다 맡아요, 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공유 및 연계방안

제1절 아동학대 정보 공유의 기본 방향과 원칙
제2절 보호단계별 필요정보, 정보공유 및 연계 방안
제3절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제4절 향후 과제

# 5

## 아동학대 정보공유 및 연계방안 <

제1절 아동학대 정보 공유의 기본 방향과 원칙

#### 1.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

국가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아동보호에 대한 책무가 국 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있음을 명시하여 아동학대 업무가 국가 사무임을 밝히고 있다. 아동학대 업무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므로 단계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 식이 아닌, 일부 지자체(성북구나 동작구)처럼 직접 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민간위탁방식에서 공공기관의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정보의 이용과 수집,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한 정보공유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과 일선 실무자들 간의 정보공유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공유 의 제약 요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에 대한 업무 협조나 관계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유 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된 정보공유의 범위 등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현장 실무자와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적 개입

우리나라에서는 학대가 발생한 이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학대와 관련성이 높은 이혼과 빈곤 등 가족해체와 경제적 위기 등에 사전에 개입하여 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 위험이 높은 아동은 누구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위험아동 이외에도 저위험 아동이나 잠재적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과 아동에게 예방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학대 발견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잠재적 학대 위험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전에 학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의 기반은 협력하는 전문기관 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다. 영국의 경우 2004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2008년 법적 기반을 갖추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결과, 아동보호서비스 의뢰 건수와 청소년 비행 및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세경 외, 2014 재인용).

아동보호체계에서 협력하는 방식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거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협력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참여기관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동학대 개입 관련기관들 간의 지리적인 접근성도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관련 기관들을 한 곳에 입주시킨다면 협력기관 간의 의사소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보호단계별 필요정보, 정보공유 및 연계 방안

#### 1. 예방 및 사전 발견 단계

#### 가.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정보 및 경로의 다양화

아동학대는 예방을 통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정이라면 신속하게 발견하여 더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는 체계에서는 신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 학대 가능성이 있 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영유아는 현재 시스템에서 신고를 통해 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집단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신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영유아의 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용이한 접근은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생후 4개월부터 만6세까지의 영유아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 항목은 아동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 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건강검진은 수검율이 2010년 50.1%에서 2015년 6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지 않다(국민건강보험 공단, 2016). 영유아 건강검진이 필수사항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우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에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진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조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유아검진이 의무화될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 가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가정방문 외에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 미수령 가정의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가정양육수당 수급가정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가정양육 환경조사를 통해 학대를 판단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되는 아동이다. 등원이나 등교하는 아동은 신고의무자의 관찰을 통해 잠재적 학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결석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을 통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대여부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교육기관 담당 선생님이 장기결석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하여 학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고위험 아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학대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잠재적 학대 가능성뿐 만 아니라 고 위험 아동을 예측하여 표시(flag)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험 아동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측을 통한 사전발견과 우선 개입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위험 아동을 예측하고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성공적으로 근절시킨 경험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힐스보로 카운티(Hilsborough County)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험 아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포함하여 관련 아동을 예측,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은 매년 발생한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아동 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망한 사례에 대해 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 을 위해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대 사망 아동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망 진상조사위원회(안)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망 진상조사위 원회 설치는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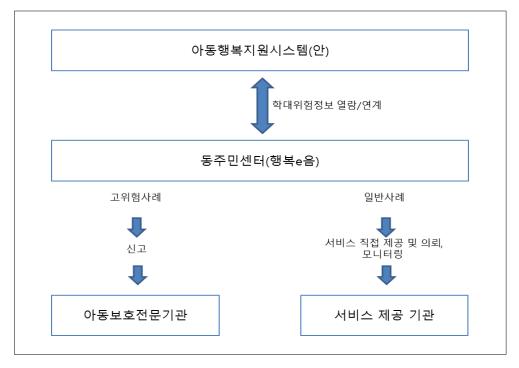
#### 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의 연계

학대피해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신청 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의 복지급여 및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기반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학대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김지연 외, 2015, p.271).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는 파악된 고위험 학대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하여 개입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위험 학대아동이나 일반 상담 사례 아동의 경 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학대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급 여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서는 모든 학대 의심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고위험 아동은 보호 절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지만 일반 상담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가정으로 보낸 후에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험도가 낮은 사례의 경우에는 지자체,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1]은 예방 및 사전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1] 예방 및 사전 발견 정보 연계 체계(안)



#### 2. 신고 접수 단계

가. 위험도(재학대 위험, 고위험 및 사망 가능성) 및 학대행위자 정보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해당 아동의 학대 경험 및 학대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 경험 및 학대 위험도에 대한 정보는 국가아동학대 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의 학대 위험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접수 단계에서 아동의 학대 위험도에 대한 정보는 현장조사에서 대응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즉각적 개입은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단계에서 동행하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의 안전을 위해 사례 접수 단계에서 경찰은 학대 행위자의 범죄경력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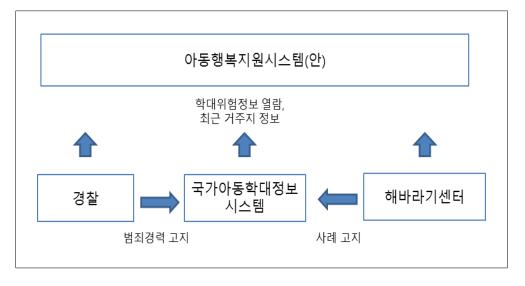
#### 나. 아동학대 유형별 담당기관 간의 정보 연계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와 장이 신고의무자로 전환되면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이들은 자신의 기관에서 신고, 접수한 아동 성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소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신고접수 분리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어렵게하기 때문이다.

#### 다. 가족관계, 거주지 이전 등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와 갱신

아동학대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위해 가족관계와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의 상담을 통한 정보 파악은 허위 정보로 인해 개입방향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족 중 친부모와 거주지 정보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족관계, 현재 거주지와 같은 기본정보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가장 최근의 정보가 갱신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5-2] 신고 및 접수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2017년에 개편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거주지 이전 정보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 이전 정보는 아동학대 사례의 유입과 이관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5-2]은 신고 및 접수단계에서 정보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3. 조사단계

#### 가. 조사, 기소, 판결과정 정보의 공유와 연계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정보가 많아 공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조사에 참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중일 경우에는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공적 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례법에 의한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에 한해서는 아동보호기관에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수사과정 상의 정보나 기소및 판결 과정상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담당자는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과 수사팀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에게 학대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공하는 수사과정의정보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과 수사팀과의 협업정도, 이들의 학대에 관한 인식과 학대업무 관련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조사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아동학대 사례의 수사, 기소, 판결과정 정보 공유/열람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4. 사정 및 개입단계

#### 가. 공통사정도구 개발 및 적용

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위험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각각 별도의 위기사정 및 진단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한 업무와 전문성에 기반한 것이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상이한 기준으로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학대위험 아동이 발견되어도 기관 간의 체계적인 의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각각의 학대아동보호체계에 속한 다양한 기관은 중복된 사정과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김지연 외, 2015, p. 277).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관련 기관의 장점을 살리면서, 각 기관에서 수집한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방법은 학대위험 또는 학대피해아동의 위기의 양상과 정도를 파악하는 1차적인 사정도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김지연 외, 2015, p.278).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정, 진단도구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공통된 사정도구(CAF, Common Assessment Framework)를 활용하여, 공공, 민간

기관이 동일한 위기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초기상담(intake) 결과와 서비스 이력을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김지연 외, 2015, p.278). 표준화된 위기사정도구는 학대피해아동의 문제와 욕구, 자원 등을 한 기관에서 파악하여 공유함 으로써, 초기상담 절차를 반복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관의 역량 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김지연 외, 201, p.278).

공통 위기사정 도구는 공식적인 서비스 의뢰와 사례 이관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위험아동 또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동일한 초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

표준화된 위기사정도구의 개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활용하는 사정도구에 기반하여, 학대의 양상과 정도, 이력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추려서 위기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 위기사정도구는 학대위기의 정도와 개입의 필요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대위험아동을 판별하고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여 드림스타트, 해바라기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위기아동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위기사정도구를 검토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통합하여 표준화된 양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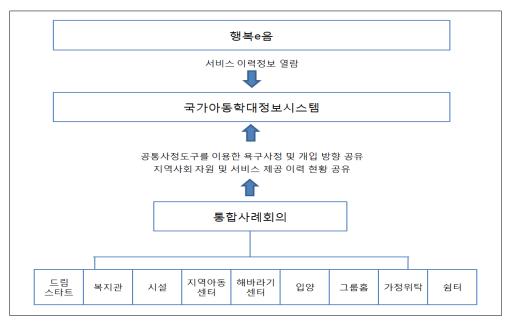
공통사정 및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표준화된 위기사정도구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위기사정도 구의 구성항목과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나. 서비스 이력정보

서비스 이력 정보는 서비스 중복수혜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 제공 이력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수혜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 문기관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관이나 기 타 다른 기관 간에는 동일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이력, 가정문제 이력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복 서비스 제 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개입의 효과성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지역사회의 많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전자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연계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지역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운영하는 사례분과회의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과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사례자문회의로 확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5-4]은 사정 및 개입단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2017년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개편안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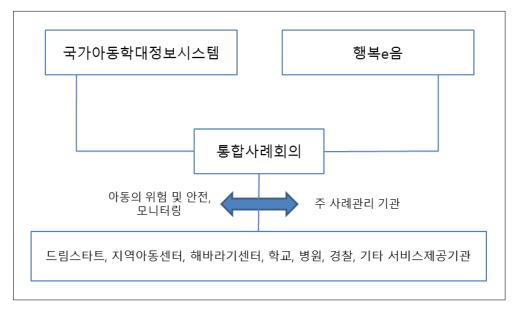


[그림 5-4] 사정 및 개입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 5. 사후관리 단계

아동에 대한 서비스 개입 이후 중점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관은 서비스가 누락되 거나 중복되어 제공되는지, 재학대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정보를 공 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청의 통합사례관리, 드 림스타트센터,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사 회 내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통합사례회의를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아동보호 중점 사례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 사례관 리기관은 재학대 위험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 정보 및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간들 간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5] 사후관리 단계 정보 연계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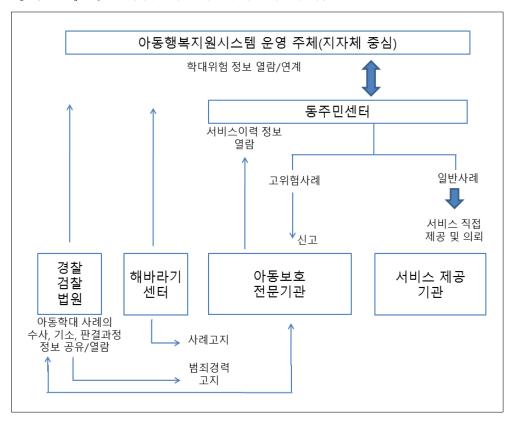
#### 제3절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복지수급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결정하거나, 기존의 수급 이력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에게도 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대한 열람권이 주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복지수급 심사과정이나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학대 위험도 표식(flag)을 이용하여 잠재적 학대 아동으로 예측 된 아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대 위험도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학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일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험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 개입절차에 따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사례회의를 통해 주사례관리 기관 설정 및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한편 중위험이나 저위험일 경우에는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위험이나 저위험의 경우에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단위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효성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피해 아동의 생활공간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전담공 무원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각 다른 기관 정보시 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심사 및 사례관리과정에서 학대 피해아동이 누구인지,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정 보를 얻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잠재적 학대 아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신고 또는 개입할수 있도록 하여 학대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보공유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 윤리강령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지연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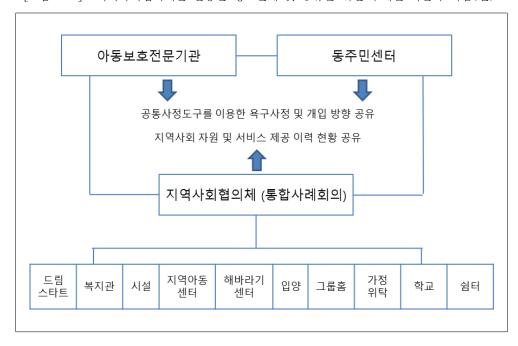
[그림 5-6]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안)

경찰,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될 때 아동의 학대 경험, 학대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신속한 개입과 정확한 개입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은 지역사회아동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공통사정도구를 이용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욕구사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내용이 해당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의 상이한 정보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공통사정도구를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부가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아동협의체가 주도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회의를 주 관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5-7] 지역사회협의체를 활용한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안)



#### 제4절 향후 과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일선에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유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방법, 기한 등 정보 공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학교를 비롯한 일부 관련 기관의 경우에는 학대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기관 및 업무담당자 등에게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법령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대피해 아동 사전발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연수를 강화하여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할 때학대피해아동 가구의 양육환경에 대한 정확한 사정, 진단과 효과적인 자원연계를 위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8조 제2항(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통합이 학대위험 아동,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통해 학대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학대위험 아동을 사전에 발견 하여 지원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개발되면 사전발견에서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피해를 최소화하는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각 기관의 상이한 정보시스템의 최소한 일부 화면에서라도 학대위험 경고 표시(flag), 과거 학대피해 경험, 거주지 실시간 갱신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도록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은 향후의 연구 과제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살펴보 았듯이, 학대위험 아동의 사전 발견, 학대위험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한 아동 학대 사례의 감소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위험 아동, 특히 학대 고위험 아동을 예측하였을 때, 이들에 대 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에 대한 후속적인 작업이 요청된다. 만약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한다면 누가 하는지,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등 법률적인 검토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학대피해아동 업무의 통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업무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축적해 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에 추가하여, 관련된 각 기관 및 담당자들의 자율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은 아동보호 이외의 자신의 고유한 업무에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통합하여 단일한 지휘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된 기관과 담당자들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향후의 연구과제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경향신문(2013). 8살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알고보니 '처음이 아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 01311041014311 에서 2016.9.23. 인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김광혁, 김정석(2012). 가족빈곤 및 지역사회환경과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발달. 사회과학논총. 28(1), pp.45-64.

김기현, 연동문, 김경희(20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현장 사용용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문할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피해자 법학 연구 23(3).

김선아(1997). 청소년건강1: 국외연구; 아동기에 경험한 신체적 성적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 간호학탐구, 6(1), pp.192-201.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6, pp.25-56.

김수정, 정익중(2016).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아동복지학, 53, pp.25-50.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2015). 아동·청소년·가족·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혜영(2016). 한·미·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52, pp.119-141나이스대국민서비스(2016). 교육행정정보화개요.

http://www.neis.go.kr

나이스대국민서비스(2016). 2016년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연수교재.

http://lib.keris.or.kr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2016).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시대의 창. 류정희 외(20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외(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미발간 자료).

박세경 외(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2015).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5년 4월, 통권 제222호, pp.79~89.

박진완(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16(1), pp.181-208.

배화옥(2004).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과 요인에 대한 다변량 생존분석:미국 플로리아주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8, pp.63-83.

보건복지부(각년도).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2011년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용지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2016).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오미희(2015).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68, pp.359-383.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이봉주 외(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도쿄도(2014). 아동방지대책 경과.

정영철 외(2014). 아동친화적 아동보호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현정, 이승연(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7(1), pp.33-53.

중앙입양원(2016),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www.ksadoption.or.kr).

중앙입양원(2016). 입양실무메뉴얼.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사회보장정보원(2016). 행복e음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ssis.or.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2013). 인도적 활동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신성식(2015).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UN 아동권리협약(http://www.ad1391.org/home/page/about/right\_UN.php). 2016.09.28. 인출.

최현수 외(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방안-아동학대 위험요인 및 연계정보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미발간 자료).

- 한겨례(2016) 아동학대 예산, 복지부 공식항목엔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7390.html 에서 2016.09.25.인출. 형사사법정보포털(http://www.kics.go.kr).
- 한국여성인권진흥원(http://http://www.womannchild.or.kr).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Disclosure of Confidential Child Abuse and Neglect Records. Washinton, DC. https://www.childwelfare.gov. 2016.10.30. 인출.
-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Care and Supervision Provided in Relation to
  Maria Colwell (1974).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care and
  supervision provided by local authorities and other agencies in relation to
  Maria Colwell and the co-ordination between them (Chairman: T. G.
  Field-Fisher)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Commission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2016). Within Our Reach: A National Strategy to Eliminate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ea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2015).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Sharing(CP-IS) Implementation Guide.

  http://content.digital.nhs.uk/media/17942/1609272013guid/pdf/1609272013 guid.pdf 에서 2016.12.20. 인출.
- HM Government (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 HM Government (2015). Information Sharing: Advice for practitioners providing safeguarding services to children, young people, parents and carers. http://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emnt \_data/file/419628 에서 인출. 2016.10.30.
- HM Treasury (2003). Every Child Matt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very-child-matters 에서 인출.
  2016.10.30.
- Hoyle, David (2010) 'ContactPoint. Because every child matters?' the encyclopaedia of informal education.
  www.infed.org\socialwork\contactpoint.htm 2016.09.01.인출.

Munro E. (2005) What tools do we need to improve identification of child abuse? *Child Abuse Review*, 14(5), pp.374-388.

Thompson, Kellie (2016). Strengthening child protection. Policy Press. Bristol UK.

The Victoria Climbié Inquiry, L. Laming, (2003). https://www.gov.uk/ government/upload, 2016.10.15. 인출.

UNICEF (2010). Adapting a Systems Approach to Child Protection

児童虐待関係法整備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seisaku/2011/07/02.html.

最新の児童虐待情報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901000-Koyoukintoujido ukateikyoku-Soumuka/0000132366.pdf.

児童福祉司の状況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2601000-Seisakutoukatsukan-San jikanshitsu\_Shakaihoshoutantou/0000099507.pdf.

児童対策協議会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 v/dl/120502\_09.pdf.

要保護児童対策協議会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v-jinshin/dl/jissen.pdf.

児童福祉法等一部改正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topics/bukyoku/soumu/houritu/dl/190-31.pdf.

社会保障審議会児童部会 児童虐待防止対策のあり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2601000-Seisakutoukatsukan-San jikanshitsu\_Shakaihoshoutantou/0000096669.pdf.

児童虐待防止対策強化プロジェクト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2601000-Seisakutoukatsukan-San jikanshitsu\_Shakaihoshoutantou/0000096697.pdf.

社会的養護の現状について 厚生労働省のHPより

http://www.mhlw.go.jp/bunya/kodomo/syakaiteki\_yougo/dl/yougo\_genjou\_01.pdf.

ルポ居所不明児童 -消えた子どもたち 石川結貴 ちくま新書.

子どもの貧困ハンドブック 「なくそう!子どもの貧困」 全国ネットワーク かもがわ出版 (武内一執筆 子どもの健康への影響).

子ども白書 (2016).武内一 執筆 貧困が新生児に及ぼす影響.

生存科学 (2016). 武内一 執筆 子どもの貧困を構造的暴力としてとらえる.

民医連医療 (2016.5). 武内一 執筆 子育て家族の貧困実態と対策.